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현안분석

-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방안
-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과세제도
- 일본 財閥의 해체과정

한국조세의 이해

법인세편

정책토론포트

적정조세와 정보

정책흐름

199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외

재정통계

국제비교자료(I)

일천구백구십팔년 오월호

C O N T E N T S

견두 칼럼		
2	경제위기, 경제학자, 모델 해저드	/羅城麟
연안분석		
6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방안	/金裕燦
20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과세제도	/金栽鎭
36	일본 財閥의 해체과정	/鞠重鎬
한국조세의 이해		
48	법인세편	/玄鎭權
정책토론 리포트		
55	적정조세와 정보	/제임스 멀리스
경제단상		
62	조세교향악 화음법	/許宗九
64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보화 마인드	/李相根
문화기행 : 이색 박물관을 찾아서		
66	한국등잔박물관	/李 濬
정책호름		
71	199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75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개최	
81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	
83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	
85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보도 참고	
재정통계		
88	국제비교자료(I)	

경제위기, 경제학자, 모럴 해저드

羅城麟 /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우리 한국 경제학자들은 요즈음 할말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 하나 제대로 예측 못하고 또 극복책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제학자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작년에 갑자기 닥친 위환위기에 대해 경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끄러움을 느껴야겠지만 우리 경제학자들로서도 할말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노조, 정부, 재벌, 일반국민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며 이런 것들이 개혁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무수히 경고한 것이 누구인가? 그리고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환위기를 예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필자는 경제학자로서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쇠귀에 경읽기가 될지라도 다시 한 번 경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 아니 경제파탄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경제주체 모두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에 있고 이 모럴 해저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한국의 경제는 아직 상당한 기간 동안 수렁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모럴 해저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대한 정보



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보험이나 집단책임과 같은 외적 안전장치를 믿고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도덕적 해이) 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고의로 조작하는(도덕적 위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재벌의 과다부채 행위도 자신들이 갚지 못할 경우엔 정부가 나서서 갚아 주리라고 기대하고,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개혁하자고 모두가 목소리를 높일 때 자신들은 그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우기는 도덕적 해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기업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바빴던 기아의 경영진이나 노조, 부정부패의 고리로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 고위관리와 정치권, 재벌 등은 도덕적 위해를 저지른 것이다.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가 늘어야 한다. 수출이 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입금융이 원활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투자가 늘기 위해서는 자본, 노동, 토지와 같은 생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 아니 경제파탄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금융부문, 재벌, 노조 등 우리 경제주체 모두의 모럴 해저드에 있고, 이 모럴 해저드의 타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산요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히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힘들다. 금융산업은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통치권자까지 나서서 기업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여력이 없다. 임금이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에 충분할 정도는 아니고, 실업자가 늘고 있지만 3D업종에서는 여전히 사람 구하기 힘들고, 노동조합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19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벌 또한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고 있으면서도 당장의 생존이 급하다는 핑계로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부의 규제는 여전히 1단계 정부개혁은 실패로 끝났으며, 정치권은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곳곳에 만연해 있는 모럴 해저드 문제를 개혁을 통해 해결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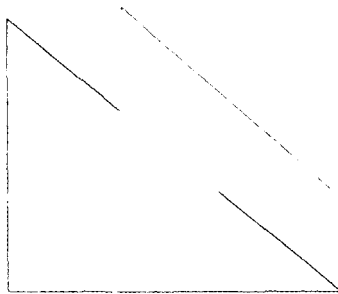
공공부문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해고가 되지 않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이 꼬박꼬박 지불된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하려 하지 대국민, 대기업 서비스를 어떻게 쓸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금융부문은 지금까지 자체 신용평가보다는 관치금융에 의해 기업들에 자금을 배분해 왔고, 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면 한국은행이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궁극적 책임을 지지 않는 극도의 모럴 해저드 문제를 안고 있다. 재벌은 대마불사(大馬不死)의 관습 아래 과도한 부채를 지고,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의 비정상적 수단을 통하여 외형성장에 치중해 왔다. 하나의 거대기업이 무너질 때 그것

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정부와 대출금을 다 잃게 될 금융기관의 약점을 이용한 모럴 해저드의 전형인 것이다. 노조는 국가 전체의 경제를 고려하기보다는 파업이라는 협박수단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모럴 해저드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오명을 갖게 하였다. 1980년대 영국이 외국투자를 유치할 때 노조들이 스스로 나서서 no-union 협약 또는 single-union 협약을 맺은 사례를 우리 노조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럴 해저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조직을 축소하며, 금융감독청이 은행건전성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은행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재벌의 비경제적 행위를 차단하며, 노사관계법의 확립을 통하여 노조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방법은 적절한 인센티브와 벌칙을 통해 모럴 해저드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보수와 진급에 업무성과를 철저히 반영하고, 불건전한 금융기관을 가차없이 파산시키고 예금자의 예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보상해 주며, 무노동 유임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 경제위기의 근저에는 모럴 해저드 문제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 모럴 해저드의 타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KIP**

현안분석



1.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방안

金裕燦/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과세제도

金栽鎭/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3. 일본 財閥의 해체과정

鞠重鎬/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방안



金 裕 燦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 부가가치세 면세의 경제적 효과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특정 업체나 업종을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제도의 밖에 있게 하는 제도로서 매출액이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기업이나 특정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혹은 정부부문이나 정부부문업무 대행업체 등에 대해 세금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면세기업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위한 기장이나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보유의무가 없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면세제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

〈표 1〉 영세율하의 세부담

	거래 단계	매출액	매입액	세 율 (%)	세 액	전단계 세 액	납 부 세 액	납부세액 합 계
영세율을 도매	제조	100	0	10	10	0	10	
단계에서 적용	도매	150	100	0	0	10	-10	25
하는 경우	소매	250	150	10	25	0	25	
영세율을 소매	제조	100	0	10	10	0	10	
단계에서 적용	도매	150	100	10	15	10	5	0
하는 경우	소매	250	150	0	0	15	-15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특정 업체나 업종을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제도의 밖에 있게 하는 제도로서 매출액이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기업이나
 특정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혹은 정부부문이나 정부부문업무 대행업체 등에 대해
 세금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되어야 할 것은 면세제도가 다단계 비누적적 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의 기본골격을 붕괴시킨
 다는 점이다. 면세가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 적용되면 다음 단계에서 환수되는 효과
 (catching-up effect)가 발생한다. 중간단계에 있는 거래자를 면세하면 최종단계 거래자의 세부
 담은 면세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크게 된다. 이 catching-up effect 혹은 cascading effect는 면
 세제도뿐만 아니라 영세율 적용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영세율제도하에서 영세율이 최종 거래단계에 적용되면 의도대로 비과세 효과가 발생하게 된
 다. 그러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종단계 이전에 적용되는 영세율은 비과세의 결과를 초
 래하지 못한다. 영세율제도하에서 기업이나 사업자는 통상의 과세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
 래에 대해서도 기장과 세금계산서 작성의 의무가 부과되며 신고에 의해 전단계의 납부세액이 환
 불된다.

영세율 적용과 달리 면세는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하면 매
 출세액은 면세에 의해 영(0)이 되는데, 전단계세액공제(환급)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납부세
 액이 발생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세가 중간거래단계인 도매단계에 적용되면 전단계

<표 2> 면세제도하의 세부담

	거래 단계	매출액	매입액	세 율 (%)	세 액	전단계 세 액	납 부 세 액	납부세액 합 계
면세율을 도매 단계에서 적용 하는 경우	제조	100	0	10	10	0	10	35
	도매	150	100	면세	0	10*	0	
	소매	250	150	10	25	0	25	
면세율을 소매 단계에서 적용 하는 경우	제조	100	0	10	10	0	10	15
	도매	150	100	10	15	10	5	
	소매	250	150	면세	0	15*	0	

주 : *로 표시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함.

세액공제가 부인되기 때문에 과세의 누적이 발생하여 납부세액 합계가 세액공제 부인액만큼 증대된다. 최종거래단계인 소매단계에 면세가 이루어져도 전단계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비과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면세에는 전단계세액의 공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면세기업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면세제도는 완전과세제도보다 분명히 조세경감을 가져오나 면세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제도가 완전과세제도보다 세부담을 증대시킨다. 왜냐하면 면세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면세기업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기업에 전가되지만 과세기업이 다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면세기업으로부터 전가된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면세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 재화는 사실상 중복과세됨으로써 면세제도는 가격체계를 왜곡하며 거래과정도 왜곡시킨다.

II.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와 최근의 세법개정 논의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서민관련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미가공식료품과 농·수·축·임산물, 수돗물, 연탄, 국민주택 등
- ②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보험용역, 국민주택건설용역 등
- ③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도서, 신문, 예술창작품, 도서관 입장료 등
- ④ 생산요소 용역: 토지, 금융·보험용역 등
- ⑤ 전문적 인적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적 인적용역
-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업(정부업무대행업체)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 ⑦ 농·어업용 석유류
- ⑧ 기타: 전화·우표·전매품 등
- ⑨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미가공식료품·기타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물품 등

최근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자동차운전학원 등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서비스에 대한 면세를 과세전환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유보되었다.

2. 최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대한 세법개정 논의

최근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자동차운전학원 등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서비스에 대한 면세를 과세전환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유보되었다. 그러나 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국제통화기금과 합의한 사항이며 이의 유보는 또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를 내포하는 조치이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축소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국회 계류)

현재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 등 전문자격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데 이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들 인적용역은 단순 근로용역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EU국가 등에서도 대부분 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인 과세전환 대상업종에는 개인·법인 등이 공급하는 용역(사업서비스업)¹⁾이 해당된다.

나. 학원 등의 교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국회 계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학원·교습소 등에서의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문리분야의 학원 중 외국어학원(성인 대상), 성인고시학원, 인문사회계열 학원과 서비스계열 학원으로 기술분야 학원 중에는 자동차운전학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 등에 대해 과세(고교생 수준 이하의 학생 대상 학원은 현행 면세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유럽국가 등에서도 학교 등에서의 비영리교육은 면세하나, 영리교육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영리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수요자가 주로 중산층 이상이며 수강여부가 선택적·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1) 변호사업, 공증인·변리사·법무사 및 행정사업, 집달리업, 해시보죄인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관세사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상담소·작명·관상·점술업, 동물훈련업 등을 말한다.

다.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일부 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시행규칙개정 검토중)

현행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농·수·축협,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 30개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민간부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가격체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업무 중 민간 경쟁관계에 있는 음식점업·수영장 등 휴양시설업, 소매업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과세전환 대상단체의 사업에는 농·수·축협의 읍면지역의 소매업,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휴양시설업, 공항관리공단의 음식점업이 해당된다.

III. 부가가치세 면세허용 정도의 국제비교

1. 부가가치세율의 국제비교

부가가치세의 최초 도입시에는 OECD 국가들의 표준세율의 평균이 12.5%였으나 현재는 평균 17.5% 수준에 이른다(〈표 3〉 참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복수(다수)세율의 부가가치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확대추세

현재에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금융, 부동산임대, 의료, 교육, 자선, 도박 등의 서비스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서적, 신문, 교통, 식료품과 같은 재화와 용역에는 보다 낮은 세율 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지출행태의 왜곡을 줄이고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3.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의 국가별 격차

OECD에서 보는 부가가치세의 표준적인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우편서비스, (치)의료서비스, 자선사업, 교육,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 활동, 문화사업, 보험과 재보험, 부동산의 임대, 금융서비스, 복권과 도박, 토지와 건물의 공급.

최근 OECD 국가들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지출행태의 왜곡을
 줄이고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표 3〉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제(1993)

(단위: %)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도입초기 표준세율	현재 표준세율
오스트리아	1973	16	20
벨기에	1971	18	21
캐나다	1991	7	7
덴마크	1967	10	25
핀란드	1969	11.1	22
프랑스	1964	20	20.6
독일	1968	10	15
그리스	1987	16	18
아이슬란드	1989	22	24.5
아일랜드	1972	16.4	21
이탈리아	1973	12	19
일본	1989	3	5
룩셈부르크	1970	8	15
멕시코	1960	10	15
네덜란드	1969	12	17.5
뉴질랜드	1986	10	12.5
노르웨이	1970	20	23
포르투갈	1986	16	17
스페인	1986	12	16
스웨덴	1969	11.1	25
스위스	1995	6.5	6.5
터키	1985	10	15
영국	1973	10	17.5
평균		12.5	17.3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1995.

〈표 4〉 부가가치세율, 표준세율 및 과세표준 추정(1993)

(단위: %)

	표준세율	부가가치세율 비중 (% of GDP)	과세표준
오스트리아	20	8.3	102
벨기에	20.5	7.0	84
캐나다	7	2.6	90
덴마크	25	9.8	96
핀란드	22	8.6	96
프랑스	18.6	7.5	99
독일	15	6.8	111
그리스	18	8.5	116
아이슬란드	24.5	9.9	99
아일랜드	21	7.0	82
이탈리아	19	5.6	72
일본	3	1.5	123
룩셈부르크	15	6.7	110
네덜란드	17.5	7.0	98
뉴질랜드	12.5	8.2	161
노르웨이	22	9.1	102
포르투갈	16	6.2	95
스페인	15	5.1	83
스웨덴	25	8.5	83
스위스	6.5	2.7	102
터키	15	5.7	93
영국	17.5	6.6	93
평균	17.1	6.8	100

자료: J. Owens and E. Whitehouse, "Tax Reform for the 21st Century," Bulletin, IBFD, Nov./Dec. 1996.

OECD에서 보는 부가가치세의 표준적인 면세범위에는 우편서비스, (치)의료서비스, 자선사업, 교육,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 활동, 문화사업, 보험과 재보험, 부동산의 임대, 금융서비스, 복권과 도박, 토지와 건물의 공급 등이 포함된다.

〈표 5〉 표준적인 면세범위에 대한 국가별 격차

	표준면세범위 분야 이외의 면세	표준면세범위 분야에 대한 과세
오스트리아	통신사업	임대(개인주택), 병원(경감세율)
벨기에	법률서비스	-
캐나다	육아, 국민자를 위한 법률구조, 도선영업, 도로·다리의 통행료, 표준지역서비스	복권, 도박, 상업용지와 건물의 공급·리스, 국내우편서비스
덴마크	여객수송, 스포츠, 장의업, 신건축물의 매각, 여행 안내업	라디오·TV 방송, 극장·영화관
핀란드	공연업, 문학과 예술작업에 대한 판권, 예술가에 의한 시각예술품의 매각, 장남에 의한 상거래, 공동묘지업	우편서비스, 문화서비스
프랑스	없음(법률서비스는 1991년 이래 과세)	건축단지와 새건물의 매각
독 일	-	-
그리스	-	문화(경감세율)
아이슬란드	스포츠, 여객수송, 작가, 작곡가, 장의업	-
아일랜드	여객수송, 방송, 공공수도업, 스포츠 경기 입장료, 장의업과 여행안내업	상업용 부동산의 장기임대, 토지와 건물의 공급
이탈리아	지역여객수송, 장의업	상업용 토지와 건물의 공급과 임대(표준세율)
일 본	사회복지사업	상업용 건물의 임대, 우편서비스, 비영리기관의 비상업활동, 문화서비스, 건물의 공급
룩셈부르크	-	-
멕시코	국내·국제 화폐거래, 금, 운송, 개인납세자에 의한 경영·농어업	우편서비스와 보험, 부동산 임대
네덜란드	확장·장의업, 공공방송, 스포츠(입장료 제외)	문화서비스(주로 경감세율)

〈표 5〉 표준적인 면세범위에 대한 국가별 격차(계속)

	표준면세범위 분야 이외의 면세	표준면세범위 분야에 대한 과세
뉴질랜드	귀금속의 공급(금, 은, 플래티늄)	우편서비스, (치)의료서비스, 자선활동 (무조건부 증여 제외), 비영리단체의 비 상업적 활동, 문화서비스, 보험과 재보험 (생명보험과 재보험 이외), 부동산 임대 (주거시설 제외), 복권과 도박, 토지와 건물의 공급(5년 이상 동안 주거시설로 사용해 온 토지와 건물 제외)
노르웨이	스포츠, 여객수송, 법률서비스, 장의업, TV, 호텔, 중개서비스, 자문서비스	-
포르투갈	농업	-
스페인	문학과 예술작업에 대한 판권	소비자가 대금을 치르는 일부 문화서비스
스웨덴	공공 TV와 라디오, 저작권, 특허회원권, 출판, 공동묘지업	우편서비스
스위스	재사용 가능한 컨테이너, 일정우편서비 스, 우표, 사회사업, 일정조건하의 대리 근로자 공급, 중고품	단기주차, 특정 은행서비스, 치과기공업
터키	해상인도와 보수작업, 사업용 항공업 또 는 철도수송업, 사회복지사업, 농업용수	교육과 문화서비스, 신문, 책, 잡지(경감 세율), 우편업, 상업용 건물의 매각, 임 대, 라디오와 TV방송, 병원, 복권과 도박
영국	화장·장의업, 스포츠 경기	새 상업용 빌딩의 공급은 완료일로부터 2년 동안 표준세율로 과세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1997.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넓다고 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식품, 의류 등의 생필품이나 신문, 도서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하여 영세율이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IV.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정도에 대한 평가

1. 부가가치세 세수와 GDP의 국제비교를 통한 평가

1993년의 OECD 국가들의 평균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17.1%, 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세의 비중이 6.8%이다. 이러한 정도로 물품 및 서비스거래가 과세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범위 평가지수 100으로 본다(〈표 4〉 참조). 우리나라는 1993년도 기준 부가가치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였고 표준세율이 10%이므로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1993년도 과세표준 범위 평가지수는 $(6.8/4.4) \div 17.1 \approx 110$ 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넓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식품, 의류 등의 생필품이나 신문, 도서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하여 영세율이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세율이나 경감세율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세수 규모는 작더라도 넓은 분야가 과세표준에 속할 수 있으므로 GDP와 부가가치세 세수의 비교를 통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범위에 대한 평가는 설득력에 다소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2. 개별 면세범위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상의 면세범위를 OECD의 표준면세범위와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이 비교를 통하여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OECD 국가들의 표준면세범위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면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우리나라 부가가치제도상의 면세범위와 OECD 표준면세범위의 비교

공통 면세부문	우편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교육, 문화사업, 자선사업, 부동산의 임대, 복권, 토지와 건물공급,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 활동, 자선사업
OECD 표준	도박
한 국	미가공식료품, 여객운송사업, 이사·이민·상속으로 인하여 수입되는 재화, 석유류, 국내제작이 곤란한 스포츠경기 관련 수입품 및 철도용 물품, 과세사업에 이용될 선박 및 보세건설용품, 면세재, 공장·광산·건설사업장 및 운송사업장, 학교급식,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 농·어업의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무연탄, 미식용 농·임·축·수산물, 인적용역

V. 면세분야의 과세전환 기준 및 면세범위 조정의 기본방향

1. 최적소비과세이론

최적소비과세이론은 주어진 조세수입의 목표를 달성하며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소비세구조의 모색에 관한 이론체계이다. 이에 관하여 램제이(Ramsey)는 과세에 의한 각 재화의 상대적 수요감소가 같아지는 세율구조를 가질 때 최적과세가 된다고 본다. 이는 균일세가 효율적 과세라고 보는 기존의 고전적 견해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과세 후에는 과세 전에 비해 각 재화에 대한 수요가 변화할 것이지만 과세 후에도 각 재화의 상대적 소비에 변화가 없다면 후생의 손실은 극소화될 것이므로 모든 재화에 대한 수요가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도록 개별적 세율이 정해지면 최적소비세 체계가 실현된다는 것(Ramsey rule)이다. 이는 각 재화의 수요가 상호독립적인(수요의 교차탄력성이 0인) 경우 최적 소비세체계는 각 재화에 대한 세율이 당해 재화의 수요탄력성과 역비례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inverse elasticity rule)으로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일수록 고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콜렛-헤이그(Corlett-Hague)는 여가(leisure)를 제외한 다른 상품에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그 상품이 여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세율구조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즉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대체적인 상품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Corlett-Hague rule)으로 효율성의 관점에서 여가가

Ramsey rule은 초과부담이 극소화되는 조세제도를 찾으려고만 했지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물건은 대개 필수품인데 이에 대해 물품세를 증과해야 한다는 일반인의 과세형평감각에 반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지 과세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불가능하므로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여가에 대해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리의 근거이다.

Ramsey rule은 초과부담이 극소화되는 조세제도를 찾으려고만 했지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물건은 대개 필수품인데 이에 대해 물품세를 증과해야 한다는 일반인의 과세형평감각에 반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 개별 면세적용범위 설정의 정책적 근거

정책실천과정에서 특정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로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다음 일곱 가지이다.

첫째,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상대적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몇몇 재화는 사회적 관점에서 소비가 권장되어야 할 재화(meritorious goods)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는데 책, 신문, 잡지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셋째, 몇몇 재화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상태에서 그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그에 대한 공급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민보건에 관련되는 의료용역, 국민주택 등에 관련되는 건설용역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토지, 근로소득 등의 기본적인 생산요소에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본질상 과세함이 부적합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다섯째, 부가가치세의 적용이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경우인데 금융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여섯째, 특정 재화나 용역에 다른 형태의 과세, 특히 개별소비세의 형태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

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전화세가 부과되는 전화서비스가 대표적인 것이다.
 일곱째,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납세자는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면세된다.

3. 면세범위 조정의 기본방향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첫째, 과세대상, 즉 재화나 용역의 특성에 따라 면세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서 면세되어서는 아니된다.

둘째, 원재료 등 중간재를 면세하는 경우 오히려 가격인상을 초래하여 소비자부담의 증가를 야기시키므로 최종소비단계에서 면세하여야 한다.

셋째, 경제순환에 있어서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일부에만 과세해서는 안된다.

넷째, 면세 적용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며 이 목표와의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다섯째, Ramsey rule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설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간접세

〈표 7〉 주요 과세전환 대상분야의 비교

(단위: %)

	사업자의 특성에 따른 면세	역진적 세부담 야기	경쟁의 중립성 저해	비 고
인적용역	.	○	.	· OECD 국가들 대체로 과세
영리목적 사설교육용역	.	○	.	· OECD 국가들 대체로 과세
금융서비스	.	○	.	· OECD 국가들 대체로 비과세 · 현재 과세전환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함 · 기술적 어려움이 있음
정부업무 대행업체	○	.	○	

주 : ○표는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전환이 타당하다는 의미임.

부가가치세의 방만한 면세허용은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장점인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상호대사 시스템의 작동을 어렵게 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쉽게 만드는 것이므로 가능한 면세는 억제되어야 한다.

비중의 증가로 인하여 세부담의 역진성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세부담의 형평성이 증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부가가치세의 방만한 면세허용은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장점인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상호대사(cross check) 시스템의 작동을 어렵게 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쉽게 만드는 것이므로 가능한 면세는 억제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면세범위 조정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제도를 살펴보면, 이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면세혜택 분야로서 인적용역, 교육용역 중 영리목적의 시설 교육용역, 금융 보험용역,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이나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 수 있다(〈표 7〉 참조).

〈참고문헌〉

김유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정책보고서 95-03, 한국조세연구원, 1995.

OECD, *Consumption Tax Trends*, 1995.

_____, *Consumption Tax Trends*, 1997.

Owens, J. and E. Whitehouse, "Tax Reform for the 21st Century," Bulletin, IBFD, Nov./Dec. 1996.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과세제도



金 栽 鎭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I. 서 론

국내경제가 개방화되고 국제화됨에 따라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MNE)이 차지하는 국가간 거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다국적기업은 각국 조세제도의 혜택 또는 허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기업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당시국의 조세수입을 일방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89년에 이전가격과세제를 도입한 후 1996년 말에 OECD지침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을 제정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전가격과세제도는 엄밀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상존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과세제도는 자료와 증빙에 의한 과학적인 근거과세를 기반으로 하므로 일종의 추정과세인 이전가격과세제도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II. 본 론

1.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연혁

이전가격과세제도는 1928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국적기업은 각국 조세제도의 혜택 또는 허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기업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당사국의 조세수입을 일방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실로 UN은 1984년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지침(Guidelin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gainst Evasion and Avoidance of Taxes)」을 발표하였으며 그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OECD는 1995년 7월에 「다국적 기업과 조세행정을 위한 이전가격결정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전가격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1988년까지는 국가간 거래에 있어서도 정상가격이 아닌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내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되는 시가에 따라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가액에 따라 거래가격을 조정하였다.

그후 개방화의 진전으로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져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 31일자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을 신설하고, 소득세법 제55조를 개정하여 이전가격에 관한 OECD의 규정을 일반적 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가간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국외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등의 산정방법 및 거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제출의무를 법제화한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국내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이고,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소득이전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틀 안에서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운용해 오며 따라 마치 조세회피를 의도하는 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1995년 12월 31일에 선진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와 OECD의 이전가격과세지침을 바탕으로

국조법을 제정하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규정된 이전가격세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즉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조세회피 의도의 존재와 관계없이 모두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전가격과세시 수반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입하였다.

- ▶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기타의 방법으로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과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을 도입하였는데, 이익분할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거래순이익률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 정상가격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s: APA)를 도입하여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997년부터 시행하기로 함.
- ▶ 자료제출의무규정¹⁾을 도입(국조법 제11조)
- ▶ 가산세 특례조항으로 정당한 상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상호합의에서 결정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시켜 주는 무과실 무가산세(no fault, no penalty rule)규정을 신설
- ▶ 제3자 개입거래규정을 도입하였음. 즉 거주자 등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거래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함(국조법 제7조).
- ▶ 상계거래의 인정조항을 둠. 즉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거주자가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한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차액이 상계됨을 입증하면,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적용함(국조법 제8조).
- ▶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규정을 도입함. 즉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및 출자 등으로 처리함(국조법 제9조).

2. 특수관계기업(associated enterprises)의 범위

특수관계의 범위는 법률적 종속관계(일정비율 이상 주식소유)에 의해 판단되기도 하고 실질적 종속관계(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에 의해 판단되기도 한다. 과거 법인세법의

1)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에서도 자료제출의무 규정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협조사항이었는데, 국조법에서의 자료제출의무는 특별히 자료제출의무 조항을 부여한 것으로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거 법인세법의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는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특수관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국조법에서는 특수관계의 범위에 법률적 종속관계와 실질적 종속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제거래의 특수성과 외국의 입법 예를 감안하고 있다.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는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특수관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국조법에서는 특수관계의 범위에 법률적 종속관계와 실질적 종속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제거래의 특수성과 외국의 입법 예를 감안하고 있다. 특수관계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조법(제2조 제1항 제8호) 및 국조법 시행령(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다시 나뉜다: ① 외국주주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② 거주자 및 내국법인 혹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그 거주자, 내국법인,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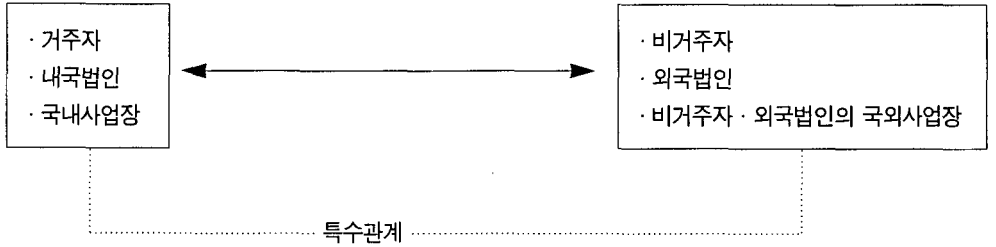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 그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거주자 및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전부 혹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결정할

실질적 지배
 · 임원 파견
 · 조합·신탁을 통한 소유
 · 거래의존
 · 자금의 차입·보증 등



수 있는 경우로, 그 일방과 타방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에서 실질적 지배의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일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타방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때
- ②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 ③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 ④ 일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타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타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 ⑤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에 주로 의존하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3. 이전가격의 결정요인

가. 법인세율의 차이

다국적기업은 기업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소재하는 계열기업의 수입가격과 이와 거래하는 세율이 낮은 국가의 수출가격을 임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고세율 국가에서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려고 한다. 또 배당소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모회사로부터의 수입가격은 상향조정하고 수출가격은 하향조정함으로써 배당소득세를

다국적기업은 기업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소재하는 계열기업의 수입가격과 이와 거래하는 세율이 낮은 국가의 수출가격을 임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고세율 국가에서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려고 한다.

경감하면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이익을 이전시킬 수 있다.

나. 관세

다국적기업은 관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전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관세의 부담은 감소하나 법인세의 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에 따라서 이전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다. 외환통제

후진국에서는 자국의 이익과 국제수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외환거래를 통제할 경우가 있는데, 다국적기업이 속한 어느 한 국가가 외환통제를 실시할 경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은 높이고 수출가격은 낮추려 할 것이다.

라. 환율·이자율·인플레이션

다국적기업은 화폐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국가로부터 평가절상하는 국가로 재산을 이전시켜서 그룹전체의 이윤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한다. 또 기업전체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국가에 속한 다국적기업은 국외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은 낮추고 수출가격은 높이는 방법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에 속한 다국적기업은 인플레이션이 낮은 국가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도록 이전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

마. 시장확보 및 유지

다국적기업은 경쟁업체를 몰리치고 시장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회사에 대한 원재료, 중간재 및 서비스 등의 공급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추어 자회사의 제품가격을 인하시킴으로써 경쟁업체를 몰리치려고 인위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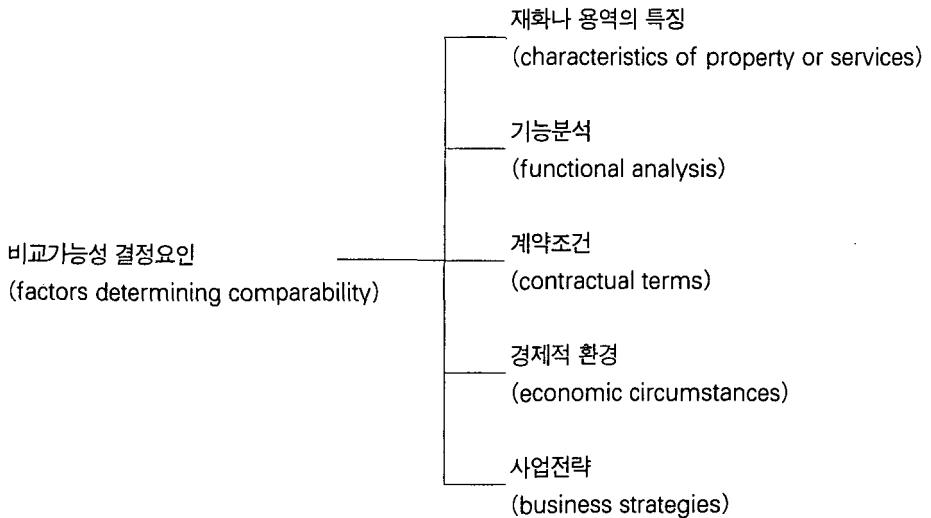
바. 신설 자회사에 대한 지원

신설회사의 경우에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현지은행으로부터 용자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다국적기업은 이전가격을 조작하여 이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다국적기업 전체의 가격을 통일시키거나 현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과의 경쟁목적 등을 위해서도 이전가격을 조정한다.

4.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의 적용지침

가. 비교가능성 분석(comparability analysis)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특수관계거래에서의 제 조건과 독립기업간의 거래의 제 조건이 충분히 비교가능한(comparable) 것이어야 한다. 비교가능하다는 것은 비교되는 상황간의 어떠한 차이도 가격이나 이익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그 차이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교가능성의 정도를 추정하고 독립기업간거래조건(arm's length terms)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독립기업간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나 기업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교가능성 결정요인(factors affecting comparability)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특수관계거래에서의 제 조건과 독립기업간의 거래의 제 조건이 충분히 비교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비교가능성의 정도를 추정하고 독립기업간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독립기업간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나 기업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실제거래에 대한 인식(recognition of the actual transactions undertaken)

과세당국의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조사는 실제로 행해진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기초하여 수행되도록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제대로 적용했는가를 본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당국은 실제거래를 무시하거나 다른 거래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사업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완전히 자의적인 것으로 타방 세무당국이 당해 거래구조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로 인한 불공평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 독립거래와 결합거래의 평가(evaluation of separate and combined transaction)

이상적으로 본다면 공정한 시장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독립기업원칙이 거래별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거래들이 밀접한 상호관련이 있거나 계속되는 것이어서 개별적으로는 적절하게 평가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관련거래를 함께 묶어 독립기업간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라. 정상가격범위(arm's length range)의 활용

정상가격 결정은 엄밀한 과학이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가정하에서 최적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여러 개의 비교대상 거래에 사용하거나 동일한 비교대상 거래에 대해서 여러 개의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정상가격이 도출되어 하나의 범위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비교대상기업으로부터 도출한 정상가격을 이용하여 하나의 범위를 만들고, 만일 이들 정상가격범위 내에 조사 대상자의 실제거래가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제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마. 다년간 자료의 활용(use of multiple year data)

특수관계를 둘러싼 여건과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연도뿐 아니라 과거 과

세연도의 자료까지 모두 조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분석이 이전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실들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년간 자료는 비교가능한 사업이나 제품수명주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바. 손실(losses)

다국적기업 전체로는 이익을 시현하나 그 중 어느 한 기업은 '계속' 손실을 시현한다는 사실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특별조사를 할 만한 계기를 찾을 수 있다. 독립기업은 계속해서 손실을 감수할 수는 없지만 특수관계기업은 손실을 보더라도 그 사업이 그룹전체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사업에 계속 잔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 그룹 내의 손실시현기업이 그룹 내의 이익시현기업과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와 세무당국에 이전가격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 정부정책의 영향(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ies)

가격통제, 이자율 통제, 서비스 대가 또는 경영수수료 대가 통제, 사용료 통제, 특정분야에 대한 보조금, 환율통제, 반덤핑관세, 환율정책 등과 같은 정부간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정상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정부의 간섭은 특정국가의 시장조건으로서 그 시장에서의 이전가격 평가시 고려되어야 한다.

아. 의도적 상계(intentional set-offs)

의도적 상계는 한 특수관계기업이 그룹 내의 다른 특수관계기업에 그 기업으로부터 받는 편익과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추어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들 기업은 각각 받은 편익이 그 편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과 상계하여 거래에서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만이 세무상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정상가격 산출 방법 등을 적용한다(국조법 제8조).

다국적기업 그룹 내의 손실시현기업이

그룹 내의 이익시현기업과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와 세무당국에 이전가격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관세평가의 활용(use of customs valuation)

독립기업원칙은 세관당국이 특수관계기업들에 의해 수입된 물품가치와 독립기업에 의해 수입된 유사한 가치를 비교하고자 할 때 종종 이용된다. 관세평가는 이전이 일어나는 시점과 동시에 또는 유사한 시점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특수관계기업의 거래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세관공무원은 이전가격 목적상 유용하고 현실성 있는 거래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차. 이전가격 결정방법의 활용(use of transfer pricing methods)

독립기업의 원칙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정상가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떤 방법도 결정적이지 못한 난이한 사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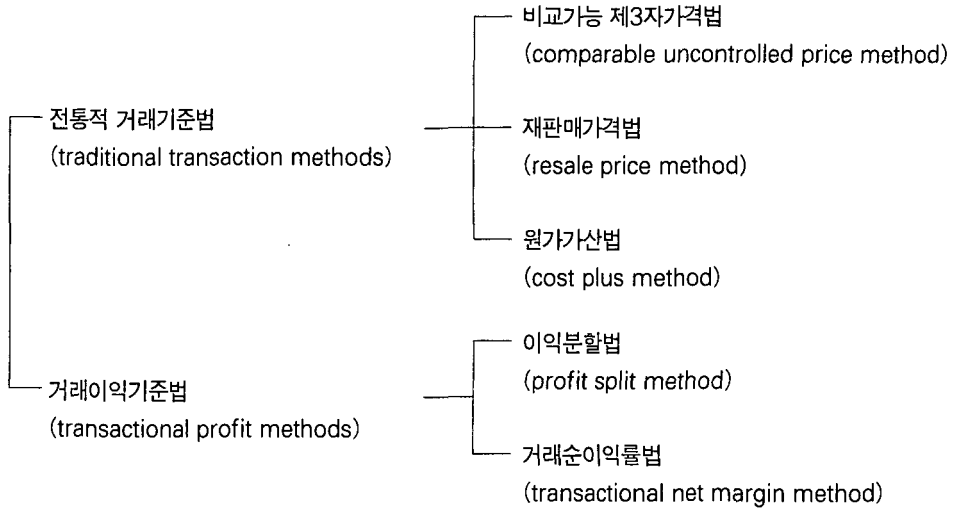
5. 정상가격의 산출방법과 우선순위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전통적 거래기준법(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이라고 하고, 이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거래이익기준법(transactional profit methods)이라고 한다.

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1)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method)

이 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즉 이 방법은 비교가능한 제3자거



래시 형성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데, '비교가능한 제3자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2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일 것
- ② 독립된 자간의 거래가 당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와 유사할 것

2)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

이 방법은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독립기업에 재판매되는 가격에서 판매비와 기타영업비 그리고 수행활동에 비추어 적절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매출총이익을 차감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즉

$$\begin{aligned} \text{정상가격} &= \text{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대한 재판매가격} - \text{통상이윤} \\ &= \text{재판매가격} * \text{매출총이익} \end{aligned}$$

이 방법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구매자가 매입한 자산에 대하여 제조, 가공 등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단순히 재판매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한다.

3)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이 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 판매나 용역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이윤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반제품이 특수관계기업간에 거래되거나 특수관계기업들이 공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중에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전통적 거래기준법이라고 하고, 이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거래이익기준법이라고 한다.

동설비계약 또는 장기구매·공급 약정을 맺은 경우나, 특수관계거래가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아주 유용하다. 재판매가격법은 당해 거래의 구매자를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하여 원가가산법은 당해 거래의 판매자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다.

정상가격 = 자산 및 용역의 제조·구입 등의 원가 + 통상이윤

4)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이익분할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고, 이와 같이 배분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장차 영업활동의 이익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실제이익보다 예측된 이익에 기초해야 한다.

5)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거래순이익률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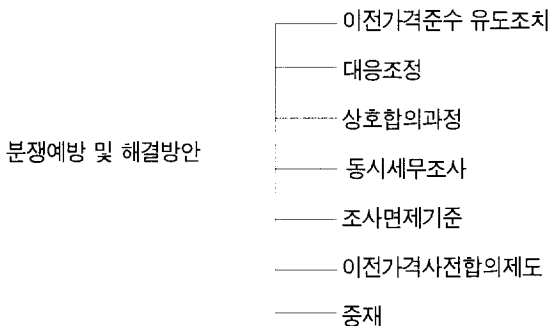
위에서 설명한 방법 중에서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되고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없지만, 국조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산출방법간 상대적인 적용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 ①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은 전통적인 거래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전통적거래가격방법 이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순서는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의 순으로 한다.
- ④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은 전통적인 가격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는 위에서 설명한 지침을 따른다 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한다. 따라서 OECD는 이전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으로 야기되는 분쟁을 해결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정적 접근방법을 마련하였다.



가. 이전가격준수 유도조치(transfer pricing compliance practices)

각국의 성실납세유도조치는 대개 다음의 3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 ① 불성실 납세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예, 원천징수와 보고의무 부과)
- ② 성실납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조치(납세지도, 교육홍보)
- ③ 불성실납세에 대한 처벌 조항

하지만 상대국가에서 동일한 이전가격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들 성실납세유도조치로 말미암아 다국적기업은 이중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그들의 국내적인 성실납세유도 조치를 적용할 때에 독립기업원칙과 그 조치들이 다른 과세관할권에 미치는 잠재력 영향력을 의식하여야 하며, 과세관할권간 조세수입의 공평한 배분과 납세자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라는 두

세무당국은 그들의 국내적인 성실납세유도조치를 적용할 때에 독립기업원칙과 그 조치들이 다른 과세관할권에 미치는 잠재력 영향력을 의식하여야 하며, 과세관할권간 조세수입의 공평한 배분과 납세자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대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s)

대응조정이란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서 조정한 가격을 사용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기업의 과세이익을 다시 계산하거나, 이전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이전가격 조정 국가 소재 특수관계기업에 추가로 과세된 세액만큼을 동 일방체약국 소재 기업의 부담세액에서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OECD 회원국간에는 전자의 방법이 훨씬 일반적이다. 대응조정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세무당국이 타방국의 임의적이며 악의적인 조정결과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다. 상호합의과정(mutual agreement procedure)

상호합의과정은 세무당국이 이중과세 방지조항 적용과 관련한 분쟁해결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상호합의를 통하여 세무당국은 비적대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나라도 국조법 제22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국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사안에 따라서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세청장 사이의 상호합의 담당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라. 동시세무조사(simultaneous tax examinations)

동시세무조사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그들이 수집하는 적정정보를 서로 교환할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조세문제에 대해 상호 동시에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동시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수집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국법하에서 비밀로 취

급되어야 하고 과세목적외로만 이용될 수 있으며, 조세조약 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특정한 조세문제에 관련된 사람과 기관에만 공개되어야 한다.

마. 조사면제기준(safe harbours)

납세자가 몇 가지 단순한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자신이 책정한 이전가격이 세무당국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그런 규칙조항을 우리는 조사면제기준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격을 갖춘 납세자에게 예외적으로 단순한 의무를 지우는 대신 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법령상의 규정을 말한다. 조사면제기준은 납세자의 특수관계거래조건에 대해 두 가지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 즉 특정거래를 이전가격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한계치를 설정함으로써 거래에 적용하는 규칙을 단순화하는 방법이 있다.

조사면제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첫째, 납세자에게 납세협력상의 부담을 경감(compliance relief)시킬 수 있고 둘째, 납세자들에게 특수관계거래에 적용된 가격이 추가적인 검토 없이 세무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는 확실성(certainty)을 제공하며 셋째, 세무당국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에 대한 부담을 면제시켜 줌으로써 행정적 단순성(administrative simplicity)을 제공한다.

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s: APA)

이는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이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대상기간 동안 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시 당해 방법의 전제요건으로 정해진 가정이나 조건이 충족되는 한, 과세당국이 승인된 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 납세의무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거래 상대방을 관할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함께 신청하고, 이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도 당해 방법의 최적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사. 중재(arbitration)

무역과 국제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세분쟁은 더 이상 납세자와 관할 세무당국간의 문제가 아니며 당사국의 세무당국간의 분쟁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국가간 이중과세 문제는 전통적으로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 왔으나 국가간 견해차이로 과세당국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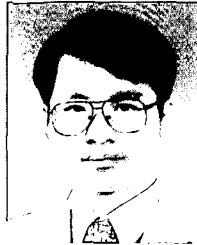
**이전가격과세는 일종의 추정과세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보다는 정상가격의 범위를 활용하여 과세마찰을
최소화하고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우도 있다. 이 경우 GATT나 그 계승기구인 WTO의 기본정신에 따라 독립성을 지닌 인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중재위원회는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지닌 예규를 제정할 수 있다. OECD도 같은 차원에서 최근 이전가격에 관한 분쟁의 중재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III. 시사점

이전가격과세는 엄밀한 과학이 아니라 정상가격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논란의 소지가 상존한다. 우리나라는 1989년에 최초로 이전가격과세제도를 도입하고 1995년 말에 국조법을 제정하여 국제적 조류에 부응하고 있지만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바, 몇 가지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가격과세제도는 세법의 단순한 적용만으로 가능한 일반 과세활동과는 달리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이해와 검토가 필요한 새로운 분야인바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둘째, 이전가격과세제도는 납세자가 설정한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자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과세당국의 요청시 제출할 의무를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 셋째,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상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납세자가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도 과세당국 스스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넷째, 이전가격과세는 일종의 추정과세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보다는 정상가격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세마찰을 최소화하고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KIP**

일본 財閥의 해체과정



韓重鎬 /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1. 서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IMF 금융지원에 따른 기업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재벌¹⁾ 개혁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분명히 말해 본고는 우리나라 재벌의 구조개혁에 관하여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있었던 일본의 財閥(자이바쓰) 해체과정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이하 전전(戰前)으로 표현) 일본의 財閥은 우리나라의 재벌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벌'이 아닌 '財閥'로 표기하기로 한다²⁾. 물론 우리나라의 재벌이나 전전의 일본 財閥은 많은 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며, 지배형태는 비록 다르나 소유자가족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서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50여년 전의 상황과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IMF 금융지원이라는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와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하 전후(戰後)로 표현)에 어떠한 財閥해체과정을 겪어 오늘날과 같은 기업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구되고 있는 재벌의 구조조정 또는 개혁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래 財閥이라는 말은 1900년 전후에 일본에서 생겨난 것으로 처음에는 동향(同郷)의 부호라는 의미였다. 그후 동향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로서 '부호일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 재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논란이 있다. 재벌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대기업집단' 또는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재벌'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2) 본고에서 한자로 財閥이라고 쓰면 '자이바쓰'를 의미하는 것이다. 財閥의 일본어 발음이 자이바쓰이다.

우리나라의 재벌이나 전전의 일본 財閥은 많은 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며, 지배형태는 비록 다르나 소유자 가족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서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야스오카(安岡重明)는 財閥을 '가족 또는 동족이 출자한 모회사(지주회사)가 중핵이 되어 여러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으로, 이때 대규모 자회사는 다양한 사업을 경영하며 각각의 산업부분에서 과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정의하며, 모리카와(森川英正)는 '부호가족·동족의 봉쇄적 소유·지배하에 성립한 다각적 사업체'로 정의하고 있다.³⁾

여기서는 어떠한 속성을 만족시켜야만 財閥에 속하는가에 관하여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하며, 다만 '가족이나 동족의 소유·지배하에 다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로 잠정적인 정의를 내리고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한다.

전전 일본 財閥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봉건적 사상이 저변에 흐르고 있다.⁴⁾ 둘째, 財閥의 지배구조는 최상층에 소유자 가족이 있고 그 다음으로 지주회사, 그 아래에 자회사와 협력회사를 갖는 피라미드형 구조로 되어 있다. 셋째, 다방면의 산업에 참여하고 산업 내의 기업들은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은행을 비롯하여 신탁회사·보험회사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 등의 금융부문도 지배한다. 이러한 특징은 전후의 일본 기업집단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특징을 갖는 財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체과정을 거치게 되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⁵⁾ 財閥해체과정에서는 점령군 사령부(GHQ)가 담당주체가 되었으며 일본의 비군사력화와 경제민주화라는 목적이 있었다.

II. 지주회사의 해체

1. 지주회사 정리위원회의 설립

야스오카의 財閥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財閥은 지주회사가 지배구조의 중핵이었다. 그러므로 財閥의 해체는 이 지주회사의 해체로부터 시작되게 된다.

3) 이러한 財閥의 정의와 관련한 논의에 관해서는 정진성의 「재벌가족과 전문경영자」, 『한일경상논집』, 제12권, 1996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이러한 특징으로서 첫째, 가족구성원의 재산분할은 요구할 수 없고 단지 소유물건으로부터의 수익을 향유하는 권리, 즉 이윤의 배당을 받을 뿐이라는 총유제적 전통을 들 수 있다. 둘째, 재산 및 수익의 배분, 나아가 배분받는 수익의 예금 및 처분에 관해 규정하는 가헌(家憲)의 중시 등을 들 수 있다. 동족들은 이 가헌 안에서만 자유로우며, 가헌의 엄격한 규율로 인해

1945년 11월 6일 점령군 사령부는 「지주회사의 해체에 관한 각서」(SCAPIN 244)를 받게 되며, 이 각서에 의해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 스미토모(住友), 야스다(安田)의 4대 財閥회사⁶⁾에 대한 해체계획의 즉시 실시를 지령하였다. 그후 4대 財閥 이외에도 점령군 사령부의 해체계획에 따라 사적독점, 겸임중역제 및 법인 상호 증권보유를 제거·방지하는 제 법률의 제정계획 등이 제출되었다.

그 당시 점령군 사령부로부터 財閥 해체를 지령받은 대장성의 실시계획안에는 財閥본사 기능의 정지, 財閥가족의 퇴진, 본사 임원의 퇴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財閥해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던 각 財閥은 구체적인 해체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4대 財閥가 행한 해체작업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4대 財閥가 행한 해체작업 내용

	작업 내용
三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년 11월 8일 三井본사 사장(三井高公)이 연합국측의 해체방침에 따라 인사 단행 · 모든 三井사업의 중추기구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산하 각 기업은 자주적으로 운영 · 三井본사의 통괄기능은 실질적으로 정지
三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년 11월 1일 三菱본사 주주총회에서 본사 해산의 실행에 착수 · 이와사키(岩崎)家 家族이 관계회사로부터 퇴직 · 피지배회사, 관계회사에 파견된 임원은 퇴직
住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년 11월 7일 住友본사 총무부장 명으로 住友 본사 해체에 관한 건이 각 관계회사에 통달 · 전임원은 자연 퇴임, 住友계 각사는 자주적인 독립회사로서 사업경영 · 住友본사의 통괄기능은 정지
安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년 10월 23일에 합명회사 安田保善社의 사원총회를 개최 · 본사기능의 정지 및 해산을 전제로 기구개혁 실시 · 야스다(安田一) 총장을 남기고 전임원이 퇴임

자료 : 大藏省財政史室編, 『昭和財政史: 第2卷 獨占禁止』, 東洋經濟新報社, 1984.

<표 1>에서와 같이 4대 財閥은 본사의 기능정지, 財閥가족의 퇴진, 혹은 본사 임원의 퇴임 등 자발적 해체를 실행하였다. 이에 따라 財閥 본사는 財閥의 중추적 통괄기관으로부터 순수한 지주회사로 변질되어 갔다. 그 결과 이 지주회사를 해체시키는 데 필요한 기관인 지주회사정리위

동족 사이의 재산다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진성의 전개논문 참조.

5) 大藏省財政史室編, 『昭和財政史: 第2卷 獨占禁止』, 東洋經濟新報社, 1984 참조.

6) 처음에는 이 4대 회사만이 지주회사라 불렸다.

점령군 사령부로부터 財閥해체를 지령받은 대장성의 실시계획안에는 財閥본사 기능의 정지, 財閥가족의 퇴진, 본사 임원의 퇴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財閥해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던 각 財閥는 구체적인 해체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원회가 1946년 8월에 설립되었다.

그 당시 대장성의 태도⁷⁾는 회사해산제한령에 기초하여 규제사무를 담당해 가면서 지주회사, 기타 바람직하지 못한 財閥적 기업형태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민주화의 선상에서 자발적 해체 또는 개조안의 작성을 권장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바람직하지 못한 기업형태는

- ① 대규모의 지배력에 의해 일본경제를 군사적 목적으로 봉사토록 할 수 있을 법한 기업형태
- ② 산하에 다수다종의 종속회사를 갖는 소위 財閥적 기업형태
- ③ 동일업종에서 한 회사가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기업형태
- ④ 수개회사의 기업연합(카르텔)에 의해 당해업종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기업형태
- ⑤ 소수의 대주주가 그 기업을 자유로이 지배할 수 있는 형태
- ⑥ 중역의 겸임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은 지배를 행사할 수 있는 기업형태
- ⑦ 기업이 금융기관에 종속하는 형태

로서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기업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장의 결과 1946년 6월 시점에서 이미 다수의 회사가 이를 작성하여 점령군 사령부의 승인을 구하고 있었다.

2. 지주회사 지정·청산 및 해체

1946년 8월 27일 지주회사정리위원회 제1차 위원총회는 三井본사, 三菱본사, 住友본사, 安田保善社, 후지(富士)산업의 5개사를 지주회사로 지정하도록 내각총리대신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지주회사로 지정(지주회사정리위원회령 제1조에 의거)하였다. 약 한달 뒤인 1946년 9월 30일 三井본사, 三菱본사, 安田保善社는 해산되어 청산에 들어갔다.

財閥의 해체는 지주회사정리위원회의 승인, 사후보고를 요하는 행위 256항목을 명시하고, 증권의 양수도 개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三井본사, 三菱본사, 安田保善社가 제1차 지정의 지

7) 대장성은 점령군 사령부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점령군 사령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주회사로서 그 해체의 전형이 되었다. 지주회사정리위원회령에 규정된 해체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정리위원회가 지정해야 할 회사를 결정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권고한다.
- ② 그에 따라 총리대신이 지주회사를 지정한다. 이는 회사해산을 공식적으로 지정한 것이 된다.
- ③ 지정된 회사는 해산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정리위원회에 의해 상무(常務)집행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④ 해산 후 청산완료까지의 기간 동안 정리위원회에 의해 청산수행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⑤ 소유 유가증권은 정리위원회가 양수한다.
- ⑥ 정리위원회는 양수재산을 관리·처분한다.

정령군 사령부는 위의 5사 이외에도 다른 기업을 지주회사로서 추가 지정하도록 비공식적으로 지시하였다. 제5차 지정까지 83사가 지주회사로 지정·'정리'되어 정리위원회가 주식을 양수하고, 상무집행·청산의 감독을 담당하였다⁸⁾. 이들 83개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정리위원회령」, 「기업재건정비법」,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의 3법에 의해 해산 및 제2회사 설립 등의 '정리'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83사 중 42사가 해산하였고, 그 중 26사는 제2회사를 설립하여 현업부분, 부동산 부분을 계승(해산되지 않은 41사는 사업의 일부를 제2회사에 분할 계승시켜 개편)하였다.

한편 동위원회는 財閥상사의 해체를 명령하였는데, 지주회사정리위원회 백서에 의하면 그 해체명령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일본의 군사적 침략이 그 경제적 제국주의의 필연의 결과였다고 한다면, 경제적 침략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경제적 전범A급이라야 한다. 이 전범A급 용의자들은 6개월 이상에 걸치는 재판성 혹은 분할안의 교섭과정에서 그 전범적 성격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이다⁹⁾.

III. 財閥가족의 지배력 배제

1. 경영참여 배제조치

정령군 사령부는 지주회사의 정리해체에 그치지 않고 財閥가족의 지배력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배제이유는 일본 財閥의 특징이 財閥가족을 축으로 한 콘체른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다는 데 있다¹⁰⁾. 배제대상으로서는 ① 財閥가족이 스스로 회사 임원에 취임하여 직접적으로

8) 지주회사정리위원회령에는 단지 지주회사를 「본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되는 회사」라고 하고 있으나 지주회사를 정하는 데는 어떠한 기준도 없었다. 제3조에 '내각총리대신이 정리위원회의 의견에 기초하여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 정리위원회가 지주회사라고 판단하면 그것이 지주회사가 되는 것이었다. 정리위원회는 사령부의 엄격한 감독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령부가 결정적인 힘을 갖는 것이 된다. 이때 현업회사이면서 지주회사적인 색채가 강한 회사를 지정한 경우가 많았다. 11월 21일 제3차 위원총회에서 財閥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지주회사적 성격이 강한 기업을 중심으로 40사를 제2차 추가 지정하였

점령군 사령부는 지주회사의 정리해체에 그치지 않고

財閥가족의 지배력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배제이유는 일본 財閥의 특징이 財閥가족을 축으로 한 콘체른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다는 데 있다.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 ② 財閥가족이 회사 임원 인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 ③ 財閥가족에 의해 콘체른적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¹¹⁾.

이에 그치지 않고 점령군 사령부는 동족 지배력에 대한 배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 결과 財閥 가족만이 아니고 財閥가족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인물(동족에 의해 임명된 財閥계 기업의 임원 포함)이 보유하는 주식 등도 매각·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에드워드 조사단에 의해 권고되었다. 에드워드 조사단의 권고에서는 이들 인물은 보유증권 가운데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된 회사의 증권은 전부를 매각하고, 기타 회사의 증권은 발행 수의 1%를 넘는 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財閥가족과 그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인물은 임원의 사임과 주식 등의 매각에 의해 산하기업과의 일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되어 동족지배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처분되어야 할 대상물로서는 증권 외에도 에드워드 권고에서는 '유동자산'이, 그후 FEC-230문서에서는 '유동자산·사업자산'이 추가되었다. 또한 간접적인 지배수단에 대해서도 그 처분방침을 명기하도록 하였다.

한편 財閥가족의 지배력 복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¹²⁾.

우선 해체의 효과를 지속시키는 조치로 10년 이내에는 財閥가족과 그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인물의 증권구입과 임원의 취임을 금지하였다.

다음으로 財閥가족의 경제적 지배력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내용으로서

- ① 싼 가격으로 주식 등을 매각할 것
- ② 구매가격이 폐전시의 시장가격 또는 장부가가격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9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할 것
- ③ 처분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은 10년간 거치의 공채로서 동결할 것
- ④ 동결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상속을 강제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할 것
- ⑤ 동결기간 만료 전에 財閥부활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

으며, 12월 3일 제4차 위원총회에서 5사만큼 대규모는 아니지만 콘체른적 성격과 현업회사로서 지주회사적 성격을 갖는 기업 20사를 제3차 추가·지정하였다.

- 9) 예컨대 三菱 상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의 변경을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다. ① 분계회사간의 임원 겸임금지 ② 분계회사간의 주식소유의 폐지 ③ 三菱은행과의 특수적 거래중지 ④ 三菱 본사 소유주의 공개 ⑤ 주요 업무에 직접 관계없는 사업의 중지 ⑥ 사명(社名)의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 財閥가족의 재산동결 조치

점령군 사령부는 경영참여 배제조치 이외에도 財閥가족의 재산동결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지주회사의 해체에 관한 각서」(SCAPIN-244)에 따른 4대 財閥가족의 재산을 동결하였다. 그 조치로서 三井, 이와사키(岩崎), 安田, 住友 4가족(또는 그 대행자)에 의한 모든 동산, 부동산(증권 및 기타 소유권, 부채, 지배권의 증거물건을 포함)의 매각, 증여, 양도 또는 이전을 금지하였다. 이로써 4대 財閥가족의 자산은 동결되었고 대장대신(결국은 사령부)의 엄격한 감독하에 놓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대 財閥가족의 재산동결에 이어 동결조치의 확대를 꾀하였다. 1946년 1월 19일 에드워드 조사단의 요청으로 사령부는 일본정부에 4財閥에 더하여 가와사키(川崎), 아사노(淺野) 등의 10가족을 더해 함께 14가족의 財閥 본사 및 財閥가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제출자료는 ① 가현 또는 가족조직을 규정한 문서 ② 혈연, 혼인, 양자조직 등으로 당해 가족과 관계 있는 財閥본사의 경영자·주식소유자의 일람표 등이었다.

사령부는 개인 재산의 처분도 단행하였다. 지주회사의 증권처분과는 달리 순개인재산인 財閥가족 등의 소유증권을 처분하는 데에는 사유재산권과 관련한 법리상의 문제가 있어 당사자의 반대도 강하였다. 이런 이유로 개인 재산의 처분에 관한 구체적 조치를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 정부측은 財閥가족에 대한 조치는 비공식적인 구두에 의한 지시로는 완전한 실시를 바랄 수 없으므로 각서의 작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사령부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사령부는 1946년 11월 26일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財閥가족 재산의 이전」(SCAPIN-1363)이라는 각서를 내게 되었다. 이때 사령부가 특정하고 있던 財閥 10가족에 속해 있던 가족원은 525명이었으며, 그후 정리위원회는 財閥 10가족에 더하여 다른 財閥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한편 점령군 사령부에서는 財閥동족지배력배제법을 제정하여, 財閥동적자(財閥와 동일호적에 속하고 있는 자)와 財閥관계임원의 임원직으로부터의 배제조치를 규정하였다. 그 목적은 財閥가족의 회사임원의 사임과 신임제한을 통한 경영배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표 2>에는 財閥가족·財閥임원의 지배력 배제를 위한 조치가 정리되어 있다. 그후, 사령부는 마침내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사령부 민정국에서 1946년 8월 20일에 정식으로 재계추방¹³⁾을 지시하는 문서를 보내 경제계 관련자의 추방조치를 취하였다. 1947년 1월 4일 공직에 관한 취직금지, 퇴관, 퇴직 등에

10) 콘체른은 지주회사가 복수 산하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상이한 산업부문을 지배할 목적으로 하는 독점조직의 한 형태이다.

11) 1946년 10월 점령군 사령부가 미국정부의 승인을 구한 '安田플랜'에서는 安田가족의 퇴진, 동족(또는 安田保善社)에 의해 임명된 임원의 퇴진, 동족이 소유하는 전주식의 매각조치가 제안되고 있었다.

질령군 사령부는 경영참여 배제조치 이외에도 財閥가족의 재산동결 조치를 취하였다. 그 조치로서 三井, 岩崎, 安田, 住友 4가족에 의한 모든 동산, 부동산의 매각, 증여, 양도 또는 이전을 금지하였다.

〈표 2〉 財閥가족·財閥임원의 지배력 배제

	조치	주요 내용
財 閥 가 족	① 예비적 조치 자산동결	4대 財閥가족 대장대신의 지정자 감독권을 대장성에서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이관
	② 지배력 배제조치 자산처분	지정가족 三井 등 10가족 총리대신의 지정자 財閥동적자
	임원직 사임	4대 재벌가족 지정가족 총리대신의 지정자 財閥동적자
	③ 부활방지 조치 증권취득 제한	財閥일족에게는 매각하지 않음 지정가족의 지출 감독을 통한 사실상 규제
	임원직 취임제한	지정해제까지 금지 財閥동적자에 대해 10년간 금지
	자산삭감	재산세법에 규정
財 閥 임 원	① 예비적 조치	
	② 지배력 배제조치 자산처분	지정가족이 지명하는 자 지정사회 등이 임원에게 보유하도록 한 주식
	임원직 사임	지정가족이 지명하는 자 財閥계 기업임원 財閥관계임원, 소위 財閥 피임명자(appointee)
	③ 부활방지 조치 증권취득 제한	
	임원취임 제한	財閥관계임원에 대해 10년간 금지
	자산삭감	재산세법에 규정

자료: 大藏省財政史室編, 『昭和財政史: 第2卷 獨占禁止』, 東洋經濟新報社, 1984.

12) FEC-230문서에서 지배력 배제 계획은 특정의 財閥가족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행되었다. 財閥가족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인물(財閥의 임원 등)에 대해서 자산처분조치는 거의 실행되지 못했지만, 임원으로부터의 배제는 공작추방의 형태로 강행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13) 추방자의 기준인 A에서 G항까지 7항 가운데 경제계 관련자(E항과 G항)가 해당한다.

관한 칙령에 의해 재계추방을 실시하였다. 재계추방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본의 팽창에 관계한 금융기관 및 개발기관의 임원(B항)'이었으나 '기타 군국주의자 및 극단의 국가주의자(G항)'에도 경제계 관계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다. 대상이 되는 회사는 자본금 1억엔 이상의 대회사, 총리대신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있다고 지명한 회사, 주요 금융관계기관, 항공기·무기를 제조하는 주력회사, 생산재 생산·운수·통신관계의 독점적 회사, 독점적 상사, 지주회사와 관계하는 대회사였다.

이상이 일본의 財閥해체과정에 관한 개략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본에서는 전후 전전의 財閥와는 그 성격이 다른 기업집단이 형성되어 갔다. 이에 관해서는 제4절에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¹⁴⁾

IV. 기업집단의 형성 및 특징

1. 기업집단의 형성

財閥해체를 경험한 일본은 전전의 財閥와는 다른 '기업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財閥에서 기업집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 이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해 보자.

사령부의 財閥해체 목적은 일본의 비군사력화와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대립양상에 따른 냉전의 시작으로 일본을 병참기지화하려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財閥해체 정책을 완화시키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 財閥해체 후 주식가격의 하락에 의한 기업의 인수 합병 가능성이 노출되면서 당면과제로서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주주의 확보를 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외국자본에 의한 일본기업 인수에 대항하기 위해 같은 계열기업간의 상호주식보유를 통한 안정주주 확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1953년 독과점금지법에 따라 사업회사 및 금융기관의 주식보유 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것이 일본의 기업집단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후요(芙蓉), 산와(三和) 및 다이이치칸킨(第一勸銀)의 6대 기업집단이다. 일본의 기업집단의 하나의 특성으로 사장회(社長會)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위와 같은 과정과 1967년 자본자유화에 대처한 산업구조조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깃카와(橘川武郎)는 일본 기업집단을 '다양한 업계의 유력한 기업이 상호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성립하여 대주회로서 사장회를 갖는 집단'이라 정의하고 있다.¹⁶⁾ 이들 기업집단은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

14) 정령부 사령부는 1948년 8월 19일 財閥상호 상표의 사용금지 권한을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주어 이때부터 財閥상호 상표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예컨대 三井생명이 中央생명으로, 住友생명이 國民생명으로, 安田생명이 光生명으로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1952년 재사용이 허가되었다.

15) 일본 6대 기업집단의 사장회 이름은 미쓰이의 二木會, 미쓰비시의 金曜會, 스미토모의 白水會, 후요의 芙蓉會, 산와의 三水會, 다이이치칸킨의 三金會이다.

전후 미·소 대립양상에 따라 일본을 병참기지화하려는

미국의 태도변화가 재벌해체 정책을 완화시켰고, 일본의 입장에서든 외국자본에 대하여 안정주주를 확보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기업집단이 형성되게 되었다.

모를 중심으로 한 구제별계의 기업집단과 후요(또는 후지), 다이이치칸킨, 산와 등의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6대 기업집단 외에 전후에 형성된 독립기업집단으로 신닛테쓰(新日鐵), 도요다(豊田), 닛산(日産), 히타치(日立), 도큐(東急), 세이부(西武) 등이 있다.

2. 일본 기업집단의 특징

일본 기업집단의 특징으로서는 첫째로 사장회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사장회는 기업집단 내에 포함된 회사의 사장들로 구성된 회의인데 이들은 자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장회는 실제적으로 대주주들의 이사회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둘째는 법인간의 원고리 형태의 상호주식 소유를 들 수 있다. 기업집단 내의 기업이 각기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리 형태로 조직적 연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개인이나 가문에 의해 소유, 지배되는 것이 불가능한 지배구조로 되어 있다. 셋째는 메인 뱅크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집단의 중핵으로 대도시은행(메인 뱅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자금 통제 등을 하고 기업집단 내 그룹을 통제하고 있다. 넷째는 종합상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상사는 기업집단의 제품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는 주식소유 이외의 여러 가지 통제수단을 이용하여 기업집단 내 그룹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집단 내 대규모회사가 협력회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협력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거래관계, 임원겸임, 자금지원 등을 이용하고 있다.

V. 결론에 대신하여

일본은 전전의 財閥해체를 경험하고 그후 기업집단이 형성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6) 오쿠무라(奥村宏)는 일본 기업집단의 특징으로 ① 원고리형 주식 상호보유 ② 사장회의 존재 ③ 멤버기업에 의한 공동투자 ④ 증핵은행에 의한 계열투자 ⑤ 종합상사에 의한 집단 내 거래 ⑥ 포괄적인 산업체계의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IMF와의 합의서에 나타난 것을 이행하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의 財閥해체 당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사령부하의 일본 財閥해체 상황과 IMF 금융지원하의 우리나라 재벌구조조정 또는 개혁을 간단히 대비해 보자.

우선 유사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는 양국 모두 외부의 힘이 가세되었다는 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그 내용에서 서로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점령군 사령부가 주축이 되어 해체작업을 진행하였고, 우리나라는 IMF라는 외부의 힘이 가세되어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는 전전 일본의 財閥 또는 우리나라 재벌의 소유구조를 보게 되면 비록 그 내용은 다른 면이 있다고 하여도 가족 또는 동족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¹⁷⁾.

셋째는 일본 財閥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밀착하여 많은 특혜를 누렸다는 것은 한국의 재벌과 정치가 밀착되어 있었던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¹⁸⁾.

다음으로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일본의 財閥해체와 한국의 재벌구조조정은 그 목적이 다르다. 일본의 침략활동은 군사·정치·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간직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령부 점령하의 일본의 財閥해체는 근본적으로 침략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IMF 금융지원하의 재벌구조조정은 경제 및 정치구조의 비효율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지배 및 경영구조 개혁에 따른 경제효율의 실현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사령부 점령하에서의 일본은 이미 財閥해체를 경험하였으나 IMF 금융지원하의 우리는 재벌의 구조조정 또는 개혁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두번째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부연해 보자. 일본은 전후에 완전한 형태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실현하나 우리의 경우 실제로 실현될 것인지 또 실현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 실현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요인으로서는 첫째,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재벌(또는 기업집단)들의 활동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너1세의 경영이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하는 점¹⁹⁾ 과 둘째, 한국의 가족개념은 엄격한 혈연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다른 혈연을 맞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4절에서 보았듯이 일본에서는 財閥해체를 거치고 그후 다시 기업집단이 형성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과 같은 해체를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형태의 기업집단을 형성해

17) 전전의 일본 財閥의 경우는 전문경영자의 비율이 높았고 우리나라는 소유경영자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18) 하토리(服部民夫)는 한국재벌 관련 특성으로서 ① 비연관된 부문의 다각화를 통한 양적 성장 ②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③ 정경유착 ④ 중앙집권화된 하향 의사결정구조 ⑤ 낮은 공식화와 표준화 ⑥ 우동적인 평생고용관행 ⑦ 온정주의적 지도관행을 들고 있다. 한국 재벌에 관한 하토리의 연구서는 服部民夫, 『韓國の經營發展』, 文眞堂, 1988을 참조하기 바란다.

일본에서는 財閥해체를 거치고 그후 다시 기업집단이 형성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과 같은 해체를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형태의
기업집단을 형성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이 앞으로 일본의 기업집단과 같은 형태로 형성되어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형태의 기업집단으로 형성되어 갈 것인가는 한마디로 단언
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의 기업집단에서도 많은 변화(예컨대 그 동안 금지되어 오
던 지주회사의 해금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 움직임 등)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KDI**

19) 전문경영인보다는 오너의 2세, 3세 등에 의해 경영권이 승계되고 있는 경우 부 또는 소득의 세습구조를 막는 상속·증여
세제의 정비 등 조세정책의 문제가 대두된다.

한국조세의 이해

— 법인세편

일반적으로 조세는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조세에 관한 논의는 조세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일반 납세자의 관심은 낮거나 감정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납세자들이 우리 조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때,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지해질 수 있는 것이다.
 본란은 일반 납세자가 우리나라 조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 시리즈로 마련되었다.
 세목별로 나누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개념중심으로 서술하였으므로,
 일반인들이 한국조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편집자 주>

玄 鎮 權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법인세는 법인에 대해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중요한 세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법인세 부담은 법인세율, 감가상각정책, 투자세액공제정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간의 조합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법인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 관심을 끄는 주된 원인은 법인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데 있다. 법인세제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국가 경제정책의 가장 유용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법인세제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관에 바탕을 두고 중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려 한다.

1. 법인이란 무엇인가?

법인세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실체인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의미를 좀더 깊이 생각해 보자. 법인이란 실체가 개인처럼 과세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법인이란 특정 경제행위를 하기 위해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허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의 주체로서의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인가?

법인이 이윤을 내었을 때, 궁극적인 수혜자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므로 법인에 대해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의 이윤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므로 개인소득세를 통해 세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의 이윤은 개인단계에서 충분히 과세되므로 법인단계의 세부담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와 상반된 견해로서 법인을 조세부담의 실체로 인정하고, 법인이 실체로서 사회의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법인단계의 과세는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법인에 대한 두 가지 견해는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 복합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논의에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 법인세제가 존재하므로 법인 실체 견해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일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

에서 세부담을 하게 되고 다시 개인단계에서 중복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법인에 대한 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단계에서의 세부담에 대해서는 개인단계에서 해당 법인의 세율을 바탕으로 완전 그로스업 방식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II.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

법인세는 명목적으로 법인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특정 경제주체에게 세부담을 지운다고 해도, 그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이를 전가함으로써 얼마든지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명목적인 세부담보다는 궁극적으로 세부담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그 제도를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할 것이다.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가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있다. 개인단계에서 배당을 수취하는 자에게 귀착된다는 가설이 있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본가에게 귀착된다는

가설도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거나, 노동자들에게도 일부 전가될 수 있다는 가설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법인세의 부담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법인세의 궁극적인 부담을 누가 지는가는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법인세가 배당을 받는 개인에게 귀착될 뿐 아니라 자본가, 소비자 등과 같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일부 전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III. 법인세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법인세 부담은 해당 법인이 회계연도 동안에 거두어들인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법인의 이윤에 대해 일정세율이 적용됨으로써 결정된다. 이때 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매우 많으므로, 세법에서는 법인세를 산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세부담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법인의 세율과 감가상각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법인세가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법인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법인세제는 세율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국가 경제정책의 가장 유용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1. 법인세율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법인의 경우에 과세표준액 1억원을 기준으로 16%, 28%의 한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어떠한 법인세율 체계가 가장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누진구조의 법인세율 체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단일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단일세율 체계는 구조가 간단할 뿐 아니라, 세제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누진적 구조와 단일세

율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에 대한 논의는 법인의 세부담과 연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법인세율이 높으면 법인의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국제비교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인세율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명목세율로서 실제의 세부담은 명목적 법인세율뿐 아니라 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 공제제도 등과 같은 비용을 규정하는 제도가 적용되어 결정된다. 그러므로 법인이 부담하는 실제의 세부담을 이야기할 때는 유효세율을 통하여 파악해야지, 명목 법인세율로는 세부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다.

〈표 1〉 법인세율의 국제비교

(단위 : %)

	세율형태	세율
미 국	누진	15, 25, 34, 39, 34, 35, 38, 35
캐 나 다	단일	28
영 국	누진	25, 35, 33
독 일	단일	45(유보소득), 30(배당소득)
프 랑 스	단일	33.3
룩셈부르크	단일	33
덴 마 크	단일	34
이탈리아	단일	36
네덜란드	단일	35
스웨덴	단일	28
일 본	누진	28, 37.5
대 만	누진	0, 15, 25
싱가포르	단일	27
홍 콩	단일	16.5
호 주	단일	33
뉴질랜드	단일	33

〈표 1〉은 각국의 법인세율을 국가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법인세율 구조는 누진세율 구조와 단일세율구조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적 가까운 미국, 영국, 일본, 대만에서는 누진적인 법인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단일세율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일세율을 가진 국가들의 세율수준을 살펴보면, 홍콩이 16.5%로 가장 낮고, 싱가포르가 27%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호주, 뉴질랜드는 30% 이상의 높은 단일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누진적인 법인세율 구조를 가진 국가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계세율의 종류, 해당 한계세율의 범위액 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비교하여야 한다. 간단하게 국가간의 법인세율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누진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최고 한계세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우리나라 일반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인 28%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와 비교적 가까운 미국, 영국, 일본, 대만에서 누진적인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누진구조를 가지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더 많은 국가들이 단일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법인세

율의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많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만과 홍콩의 예가 많이 거론된다. 그러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만과 홍콩은 국가간 비교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므로 이들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수준을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법인의 실제 세부담이 결정되는 과정을 개념적으로 도식하면

실제의 세부담은 명목적 법인세율뿐 아니라 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 등과 같은 비용을 규정하는 제도가 적용되어 결정된다. 그러므로 법인이 부담하는 실제의 세부담을 이야기할 때는 유효세율을 통하여 파악해야 한다.

〈그림 1〉과 같다. 법인의 실제 세부담은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액공제의 세 가지 정책수단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법인세율이라는 한 가지 정책수단만을 이용해서는 실제 세부담을 파악할 수 없다.

법인세율과 실제 부담하는 유효세율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국가 A와 B의 간단한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국가 A는 법인세율이 10%로 비교적 낮으나, 세법에서 규정한 자산의 평균 내용연수가 5년이며, 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국가 B는 법인세율은 20%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세법에서 규정한 자산의 평균 내용연수가 2년으로 매우 짧고, 세액공제제도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명목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 B의 유효세율이 국가 A의 유효세율보다 오히려 낮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법인세율이 낮다고 해서 실제 세부담이

반드시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법인세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정책을 통해 과세표준을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통하여 또 다시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인의 세부담에 대한 국가간 비교는 세부담을 결정하는 명목 법인세율뿐 아니라 감가상각제도, 세액공제제도 등과 같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된 유효세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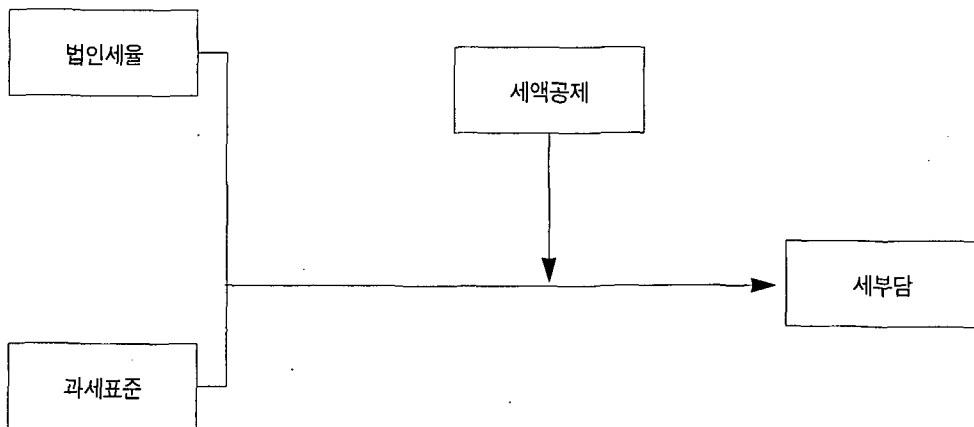
2. 감가상각제도

감가상각제도는 기업의 재무구조와 세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업종별로 편차가 심하지만, 고가의 기계 및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원가의 절반 정도를 감가상각액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중요한 제도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감가상각제

도는 오랫동안 관습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며, 1995년에 와서야 대폭 개정되었다. 이때 개정된 감가상각정책은 관습에 의해 형성된 우리의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나라 감가상각정책의 변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감가상각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감가상각정책은 크게 두 가지 시각에서 서로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접근법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 감가상각액은 실제의 감가상각액과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실제 감가상각액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 고정자산을 중고시장에서 매매하였을 때 가지게 될 시장가격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물론 해당 고정자산의 중고시장이 존재하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의 감가상각액에 대한 논란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감가상각정책은 세법상의 감가상각액을 실제 감가상각액과 일치시키기 위해 자산별 내용연수, 잔존가

〈그림 1〉 법인세 부담의 과정



액,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필요로 한다. 이 접근법에 의해 감가상각정책을 입안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과 일본이다. 이들 나라의 감가상각제도를 보면 자산별 실제 감가상각액을 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자산별로 매우 세밀하게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다.

두번째 접근법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액이 실제 감가상각액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감가상각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수단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자극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가상각을 정부정책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상, 실제의 감가상각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접근법은 미국,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산별 실제 감가상각과 일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제도가 매우 단순하다.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는 해방 이후 제정된 제도를 골격으로 1994년까지 이어져 왔다. 엄격히 말하면 일본의 감가상각제도를 대부분 모방하여 우리 제도의 골격으로 삼아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는 첫번째 접근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 감가상각이 실제의 감가상각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995년 전까지 우리의 감가상각제도는 고정자산을 자산별로 약

600가지로 세밀히 나누고 세법에서 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복잡하게 규정해 왔다. 또한 10%의 잔존가액하에서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자산별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이 자산별 실제 감가상각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1995년 개정된 감가상각제도는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기존의 제도에서 세법에서 규정한 감가상각을 현실과 일치시키자는 의도를 가진 데 반해, 이 제도는 세법에서 규정한 감가상각이 현실과 별개임을 선언하고 있다.

1995년 개정된 감가상각 제도는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감가상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

였다. 기존의 제도는 세법에서 규정한 감가상각을 현실과 일치시키자는 의도를 가진 데 반해, 새로운 제도는 세법에서 규정한 감가상각이 현실과 별개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독일 및 일본형에서 미국 및 영국형으로 전환한 것이다.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별 내용연수를 대폭 단축시키고, 업종별로 나누어 모든 자산의 내용연수를 일원화하였다. 또한 기업별 특수성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정부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의 기준치에서 상하 25% 내에서 자유롭게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규정된 내용연수에서 추가로 내용연수를 25% 짧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잔존가액을 폐지하여, 유형고정자산을 구입한 비용을 모두 감가상각액으로 인정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감가상각제도의 시행은 기업에 커다란 세부담의 완화를 가져다 주었다. 일반적으

로 법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율 1~5%의 감소가 주장되고 있지만, 새로운 감가상각제도는 기업에 법인세율 5% 인하 이상의 효과를 주게 된 것이다.

새로운 감가상각제도가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킨 것은 바람직한 개정방향이지만, 감가상각제도의 변화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분야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감가상각제도가 개정되기 전에는 세법에서 규정한 감가상각제도가 실제의 감가상각제도인 양 묵시적으로 통용되었다. 그래서 자산평가에서나 한 국가의 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세법에서 규정했던 구감가상각제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50여년을 지탱해 왔던 것이다. 이제 새로운 제도는 자산별 실제 감가상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졌다으므로, 실제의 감가상각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추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IV. 법인세제는 왜 중요한가?

법인세제는 법인의 세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일차적 기능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경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법인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만큼, 법인의 투자행위는 경제정책의 방향과 일치되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 업종 및 특정 기능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때는, 법인세제를 통하여 법인의 투자행위를 유도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압축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세제를 통해 특정

업종과 기능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 업종 혹은 기능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감가상각, 준비금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법인의 투자를 유도하였다. 경제정책의 한 수단으로서의 법인세제의 기능에 대해서는 학계와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법인세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과거에는 대체로 금융정책수단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금융자유화와 같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점차 조세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의 법인세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KDI**



정책토론포트

적정조세와 정보 (Optimum Taxation and Information)

*이 원고는 1998년 5월 8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공공경제학회,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적정조세와 정보」를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임스 멀리스(James Mirrlees) 교수 초청세미나 주제발표의 요약입니다.

- 편집자 주 -

적정조세와 정보

(Optimum Taxation and Information)

제임스 멀리스(James Mirrlees) /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리·요약 :金正勳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오늘 강연에서는 적정조세이론의 주요 토픽을 살펴볼 것이다. 적정조세이론은 각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인데, 오늘은 적정조세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관하여 서도 논하고자 한다.

적정소비과세에 관한 이론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지만, 항상 Ramsey(1927)가 최초로 분석한 모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Ramsey는 1인경제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Ramsey의 결과는 1인경제하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정조세의 모든 일차조건(first-order conditions)들이 조세가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Ramsey모형은 모든 적정조세이론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발전시킨 적정조세이론의 일차조건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새로운 표현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소비자는 경제 내에 n 명이 있다고 하고, 각 소비자 h 의 수요

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자.

$$x^h(q, b)$$

여기에서 q 는 소비자가격이고 b 는 정액소득(lump-sum income)으로 모든 소비자에게 같다. 이윤에 대한 과세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생산기술은 규모에 대하여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이제 소비자의 간접효용함수는 $v^h(q, b)$ 라 쓸 수 있다. 공급과 수요는 일치하여야 하므로 y 를 공급량이라 표시할 때, $y = \sum x^h$ 이다. 정부의 공공지출을 G 로 표현하고 생산자가격을 p 로 표시하면, 자원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p \cdot y = -G \tag{1}$$

이상은 매우 표준적인 적정조세이론의 모형을 요약한 것인데, 후생함수를 정의한 다음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q 와 b 의 일차조건을 구하면, 적정 q 와 p 의 차이가 적정세율이 된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적정세율은 소비자 및 생산자 가격의 표준화(normalization)에 달려 있



제임스 멀리스 교수

에딘버러대학교 수학 석사학위 취득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동 대학에
 서 강의
 옥스퍼드대학교 교수 역임
 199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현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는데, 어떠한 표준화를 선택하든 적정세율은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적정세율이 유일하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적정세율은 주로 세금이 수요에 미치는 효과로 표현되지만, 적정세율을 표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역수요함수(inverse demand function)를 사용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평균수요량을 x 로 표현하면, 소비자가격 $Q(x)$ 는 다음의 식으로부터 정의된다.

$$\sum_h x^h(Q(x), b) = nx \quad (2)$$

물론 식 (2)에서 Q 의 값은 표준화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균형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은 표준화로 $Q \cdot x = 1$ 을 선호할 것이다. 공공경제학자들은 특정 상품의 소비자가격을 1로 놓고 싶어할 것이다.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준화에 대한 또 한 가지 방법은 잠시 후 소개할 것이다. 어떠한 표준화를 선택하든, 소비자의 예산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 = Q \cdot x \quad (3)$$

그리고 x 의 적정수준은 다음과 같은 극대화 문제에서 도출된다.

$$\text{Max}_x \sum_h v^h(Q(x), Q(x) \cdot x) \text{ subject to } p \cdot x = -g \quad (4)$$

여기에서 g 는 G/n 이다. 로이의 항등식(Roy's identity)를 이용하여 극대화 문제 (4)의 x 에 대한 일차조건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sum_h v_b^h(-x^h \cdot Q_x + x \cdot Q_x + Q) = \lambda p \quad (5)$$

여기에서 λ 는 제약조건의 라그랑지 승수이다. 식 (5)는 x 의 가중평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보다 흥미로운 형태를 띤다.

$$\hat{x} = \frac{\sum_h v_b^h x^h}{\sum_h v_b^h}$$

이제 식 (6)을 이용하여 식 (5)를 다시 쓰면,

$$Q - \lambda p = -(x - \hat{x}) \cdot Q_x \quad (7)$$

이다(식 (7)의 λ 는 식 (5)의 λ 를 $\sum_h v_b^h$ 로 나눈

것이다). 생산자가격의 절대수준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λ 를 1로 놓으면, 식 (7)의 좌변은 적정세율을 나타낸다. 물론 식 (7)의 우변은 세율에 따라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식 (7)이 적정세율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정세율의 알고리즘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식 (7)의 우변은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정보를 지니고 있다. 우선 $x_i - \hat{x}_i$ 는 상품 i 가 저소득층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하게 하는, 즉 형평성에 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partial Q_i / \partial x_i$ 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 Q_x 는 수요의 변화에 따른 균형 소비자가격의 변동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품 i 가 사치재이면서 수요탄력성이 낮다면 상품 i 에 대한 적정세율이 높아야 함을 식 (7)은 시사하고 있다. 물론 이는 교차탄력성을 무시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해석이고, 보다 일반적인 해석을 하자면, 어떤 상품의 세율을 올렸을 때 그 효과가 주로 사치재들의 가격을 올리는 데에 있다면, 그만큼 세율은 높아야 한다.

적정세율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끝이 없는데, 식 (7)을 탄력성 및 상관계수로 표현하면 훨씬 더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r_i 와 ζ_{ij}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보자.

$$r_i = \frac{x_i - \hat{x}_i}{x_i} \quad (8)$$

$$\zeta_{ij} = \frac{x_i}{Q_j} \frac{\partial Q_j}{\partial x_i} \quad (9)$$

식 (8)에서 r_i 는 소득의 한계효용인 v_i^h 와 수요량 x_i^h 와의 상관계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정의를 이용하면, 식 (7)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frac{t_i}{q_i} = \frac{q_i - \lambda p_i}{q_i} = \sum r_j \zeta_{ji} \quad (10)$$

식 (10)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은 적정조세율에 대한 이러한 표현이 세율을 실제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가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통상적인 적정조세율의 표현에 비하여 덜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다. 개별 수요함수가 사라졌고, 우리가 수요탄력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정보가 ζ 값을 아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어차피 수요함수이건 역수요함수이건 데이터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식 (10)의 형태가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역수요함수를 따로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식 (7)과 식 (10)을 자세히 보면, 적정세율은 두 가지의 정보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상관계수 r_i 에 내포되어 있는 형평성에 관한 정보이고, 둘째는 세금에 대한 수요의 반응이다. 결국 이 두 가지만이 적정세율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노동과의 대체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품에 대한 세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야 한다는 Corlett-Hague(1953)의 원칙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 원칙은 사실상 식 (10)에 숨어 있는데, Corlett-Hague 원칙은 수요의

반응 중 노동공급과 관련된 수요의 반응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과세되지 않는 기준재화(numeraire)로 노동을 선정할 때 이러한 사실은 보다 명백히 파악될 수 있다. 평균노동공급을 ξ 로 표시하고, 그 밖의 상품 x 에 대한 역수요함수를 $Q(x, \xi)$ 로 표시해 보자. 이 경우 노동공급에 대한 일차조건은 다음과 같다.

$$1 - \lambda = (x - \hat{x}) \cdot Q_{\xi} \quad (11)$$

(식 (10)에서 노동공급은 음의 부호를 가지나 ξ 를 양의 값으로 정의하였으므로 부호가 바뀌었다.) 식 (11)의 λ 값을 식 (10)에 나타난 x 에 대한 일차조건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Q - p = (x - \hat{x}) \cdot [-Q_x - Q_{\xi}p] \quad (12)$$

식 (12)에서 Q_{ξ} 는 x 가 ξ 와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를 나타내므로, 식 (12)는 Corlett-Hague의 원칙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식 (12)를 도출하기 위하여 역수요함수의 정의를 변경하였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소비자가격의 표준화방법으로 또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다. 소비자들의 정액소득의 부호는 양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으므로 b 가 1이 되도록 소비자가격을 표준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Q \cdot b = 1$ 이고,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sum_i \xi_{ij} = 1, \quad \forall j \quad (13)$$

식 (13)은 매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과세기반확대(broad-based taxation)와 적정조세

적정소비과세에 관한 이론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지만,
적정조세의 모든 일차조건들이 조세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Ramsey모형은 모든
적정조세이론의 기초가 된다.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과세기반확대론자들의 주장은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각 상품의 세율을 낮출 경우 조세예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주장의 극단적인 형태는 모든 상품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개별 상품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경우 의미를 잃게 된다. 오직 개별상품에 대한 우리의 무지가 심각할 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식 (10)은 개별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의 적정세율이 어떠한 형태를 띠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도 지침을 제공한다. 개별 상품의 수요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ξ_{ii} 는 모두 같고, ξ_{ij} 역시, $i \neq j$ 일 경우, 모두 같다고 가정하자. 식 (13)으로부터 다음이 도출된다.

$$\xi_{ii} = z, \quad \xi_{ij} = \frac{1-z}{m-1} \quad (14)$$

식 (14)를 이용하면, 식 (10)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frac{t_i}{q_i} = \frac{mz-1}{m-1} r_i - \frac{m(1-z)}{m-1} \bar{r} \quad (15)$$

노동소득에 대하여 적정비선형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소비의 불형평성이 존재하더라도 소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 또한 이러한 결론은 노동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선형으로 제약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bar{r} 는 상관계수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식 (15)를 보면, 우리가 개별 상품의 수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형평성이 적정세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_i 가 상품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또한 mz 가 1에 가깝다는 가정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Angus Deaton(1981)이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수요체계의 계수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측정치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Ahmad & Stern(1984) 및 Heady & Mitra(1980)가 이미 하였던 것처럼, 보다 특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수요의 계수들에 대한 측정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식 (10)을 보면 공공지출 g 가 어느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 적절한가가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공지출이 형평성의 척도인 r_i 및 수요함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공지출이 이들 값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힘들다. 따라서 적정소비세율이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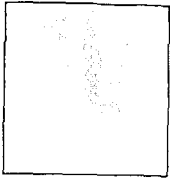
공지출의 수준과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지출의 증가는 정액소득인 b 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사실 Stern(1976)은 적정선형소득세를 분석할 때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즉 공공지출의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소득세의 한계세율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적정세율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세율 및 보조율의 비선형성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경우 역함수의 탄력성을 도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Atkinson & Stiglitz(1976)가 보였던 바와 같이, 만약 노동소득에 대하여 적정비선형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소비의 불형평성이 존재하더라도 소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 또한 이러한 결론은 노동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선형으로 제약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역주: 이 경우에는 지출함수가 선형(linear expenditure function)이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따른다. Atkinson & Stiglitz(1980, pp. 428~435)를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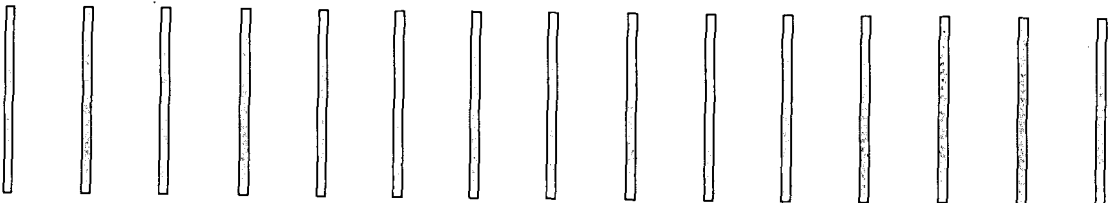
〈참고문헌〉

- Ahmad, E. and N. Stern, "The Theory of Reform and Indian Indirect Tax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5, 1984, pp. 259~298.
- Atkinson, A. and J. Stiglitz, "The Design of Tax Structure: Direct versus Indirect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 1976, pp. 55~75.
- _____, *Lectures on Public Economics* New York: McGraw-Hill, 1980.
- Corlett, W. and D. Hague, "Complementarity and the Excess Burden of Tax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21, 1953, pp 21~30.
- Deaton, A., "Optimal Taxes and the Structure of Preferences," *Econometrica*, 49, 1981, pp. 1245~1260.
- Heady, C. and P. Mitra, "The Computation of Optimum linear tax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47, 1980, pp. 567~585.
- Ramsey, F.,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axation," *Economic Journal*, 37, 1927, pp. 47~61.
- Stern, N., "On the Specification of Models of Optimum Income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 1976, pp. 123~162. 



정책흐름

1. 199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2.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개최
3.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
4.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
5.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보도 참고





다음은 재정 관련 주요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199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와 재산세제과에서 4월 15일에 발표한 「199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입니다.

- 지난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4월 10일에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및 자산재평가법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 지난 1월 15일에 발표한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제조정(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등 3개 세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부채의 범위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 및 CP 추가
- 특별부가세 면제액 추정기준인 부채비율 증가여부 판정시 자산 재평가에 의한 부채비율 감소분은 불인정
- 재평가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부동산매매업자 보유자산 및 재고자산을 제외
- 재평가대상 자산 규모가 8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감정평가사 수가 20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함.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사항

1.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12.31까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상환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확대 •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추가

○ 개정이유

-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과 자금조달 효과면에서 동일
- 기업어음, 회사채도 금융기관부채에 포함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적용례

- 공포일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보완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12까지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하여 부동산매각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 그후 5년간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 •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 • 재평가차액은 자기자본에서 차감하여 부채비율을 계산 (시행규칙에서 상세 규정)

○ 개정이유

- 자산재평가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자기자본 계산시 이를 차감하여
-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이 부동산의 처분, 증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

○ 적용례

- 공포일 후 최초로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미분양 국민주택의 범위

법 개정내용	시행령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 3. 1부터 1998. 12. 31까지 취득하여 - 5년 이상 보유·임대하고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 미분양 국민주택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 특례적용 방법(다음 중 선택) • 20%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또는 •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분양 국민주택의 범위 - 서울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으로서 - 시장·군수·구청장이 1998. 2. 28 현재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하고 -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개정이유

- 미분양국민주택의 분양 촉진을 위하여 취득기간을 1998년 3월 1일~199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므로,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1998년 3월 1일의 직전일인 1998년 2월말 현재의 재고주택으로 함.

II.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개정사항

1. 재평가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

법 개정내용	시행령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 - 1997 이전 취득한 토지 - 감가상각 대상자산 - 다만, 매매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 •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자산 •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건설업자 보유토지 등)

○ 개정이유

-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님을 확실히 함.

○ 시행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2. 시가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 개정이유

- 형평성과 시장경쟁의 원리를 감안하여 일반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도 재평가를 허용하되

법 개정내용	시행령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 - 한국감정원 ⇒ 모든 감정평가법인 - 다만, 대통령령에서 재평가 대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기관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평가기업의 재평가대상 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기관의 범위를 구분 - 8천억원 이상인 경우 : 소속 감정평가사 수 20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 - 8천억원 미만인 경우 : 모든 감정평가법인

- 대규모자산에 대한 감정처리능력, 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업무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구분함.

○ 시행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3. 직전 1년간 평균환율로 평가하는 자산의 범위

법 개정내용	시행령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기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환율로 평가시 - 직전 1년간 환율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평균환율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 항공기·선박·차량·기계장치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자산

○ 개정이유

- 환율의 변동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지는 수입 항공기·선박·차량·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직전 1년간 평균환율로 평가

○ 시행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4. 재평가 신고기한 연장사유

법 개정내용	시행령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평가를 한 기업은 재평가 일부터 9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 가능 * 신청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① 국제기본법상의 신고기한 연장사유(천재지변 등) 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지연되는 경우 - 신고기한 연장기간 • ②의 경우 9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①, ② 모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연장 불가

○ 개정이유

- 현재 통칙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연장사유를 명문화하되

- 세무서장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재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연장할 수는 없도록 하고

- 고의적인 재평가세 납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지연으로 인한 연장은 90일 이내에서만 허용

○ 시행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국제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5. 재평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법 개정내용	시행령 개정안
○ 세무서장은 재평가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	○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예시 -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의 재평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단, 수입한 기계 등의 경우 외화로 표시한 재평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

- 개정이유
 - 재평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예시
 - 재평가액의 과대계상으로 인한 과도한 감가상각 방지
- 시행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III.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1. 준비금·충당금 손비인정한다 축소(기발표사항)

현 행	개 정 (안)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비인정제도 - 대상 : 신용보증기금 등 7개 신용보증사업 법인 - 한도 : 보증잔액의 2%	- 보증잔액의 1%로 축소
○ 증권거래준비금 손비인정제도 - 대상 : 증권회사 - 한도 : 총 거래액의 0.02%(사고손실 보전) + 매매익의 60%(매매손실 보전)	- 매매익의 30%로 축소 * 사고손실 보전을 위한 준비금 적립제도는 폐지
○ 비상위험준비금 손비인정제도 - 대상 : 손해보험회사 - 한도: 수입보험료×영업이익률(20% 한도)	- 수입보험료의 2%(영업이익률 한도)로 축소
○ 금융기관 모집권유비 손비인정제도 - 은행, 상호신용금고, 투신사, 증권사 : 적금 등 계약액의 0.1% - 손해보험 : 수입보험료의 2%	- 현행수준의 2분의 1로 축소

- 개정이유
 -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일부 업종에만 허용되는 충당금제도의 손비인정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

- 시행시기 및 적용례
 -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 손금산입분부터 적용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개최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에서 4월 24일에 발표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개최」의 전문입니다.

- 4월 23일(목) 16:30부터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회의(1998년 제1차)가 개최되었음.
- 이날 회의에는 박종기 총괄분과위원장 등 분과위원들과 세제실 관계자가 참석하여 「1998 세제개편 추진방안」 중 “조세체계의 간소화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가졌음.
- 조세체계의 간소화
 - 조세체계의 간소화로 투명성과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세부담을 적정화
-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근거과세 확립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 방안
 - 세무행정의 획기적 개선으로 과세표준 양성화 유도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로 소득종류간·계층간 과세형평성 제고
 -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

조세체계의 간소화 방안 (1998년 4월 23일)

I. 추진경위

- 지난 3월 31일, 1998년 제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1998년 세제개편의 주요 검토과제를 선정하고 각 분과위원회 산하의 실무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연구·검토중
- 각 분과위원회별 주요과제는 다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경제 구조조정 지원
 - 토지세제 개편 및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 외부불경제 물품에 대한 소비세 과세 강화
 - 자본·외환 자유화와 관련된 과세제도의 개선
 - 해외부동산 및 자본거래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방안

- 장기·안정적 세입기반의 확보
- 조세감면제도의 축소·정비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추진
- 이상의 과제 중 「조세체계의 간소화」는 현재의 복잡한 조세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세제의 투명성과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주행세제」의 도입, 불합리한 토지세제의 개편 등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 ⇒ 1998년 제1차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총괄분과위원회에 토의과제로 상정

(tax on tax), 심지어 조세감면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물리는 부가세(surtax) 방식의 목적세를 운용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과세구조

- * 농어촌특별세는 7개 세목, 교육세는 11개 세목에 부가세 과세
- 다음 2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복잡한 조세체계는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거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II.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

1. 세금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과세체계가 복잡

- 국세 17개, 지방세 15개 등 총 32개 세목 운용으로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비추어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과세체계가 복잡

주요국의 세목수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계	32	18	16	19	17	43
· 국세	17	8	15	8	13	20
· 지방세	15	(10)	1	7	4	23
· 공동세 등	-	-	-	4	-	-

주 : 미국의 경우 지방세는 주별로 상이하. 10개 내외

-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경우 세제가 복잡하고 국제규범과 불일치하여 투자에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우리 조세체계는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거나

[사례 1] 승용자동차 구입시의 세금

- 승용자동차 구입시에 본세 4가지에 부가세 3가지가 덧붙여 총 7가지 세금을 부담하게 됨.

- ① 특별소비세 : 출고가에 대해 배기량별로 10, 15, 20%
- ② 교육세 : ①(특별소비세액) × 30%

<특별소비세분>

- ③ 부가가치세 : (출고가 + ① + ②) × 10%
- ④ 취득세 : (출고가 + ① + ②) × 2%
- ⑤ 농특세 : ④ × 10% (또는 감면세액 × 20%)

<취득세분>

- ⑥ 등록세 : (출고가 + ① + ②) × 5%
- ⑦ 교육세 : ⑥(등록세액) × 20%

<등록세분>

⇒ 미국과의 자동차 관련 통상마찰 야기

[사례 2] 토지 취득시의 세금

- 토지 취득시에 본세 2가지에 부가세 2가지가 덧붙여 총 4가지 세금을 부담하게 됨.

- ① 취득세 : 취득가액 × 2%

② 농특세 : 취득세액 × 10% (또는 감면세액 × 20%)

〈취득세분〉

③ 등록세 : 취득가액 × 3%

④ 교육세 : 등록세액 × 20%

〈등록세분〉

⇒ 외국인 토지 취득시 세금에 대한 불만

○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간소화·합리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필요

○ 아울러 「알기 쉬운 세제」를 통하여 국민의 납세효용도를 높이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

○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정비해 나감으로써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

2.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위기상황에 탄력적인 대처 곤란

○ 목적세 비중이 계속 높아져 18.7%에 달하며, 재원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재원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노출

○ 실업대책,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등이 시급한 과제가 나타나 이에 대한 재원의 우선 배분에 애로

연도별 총국세 중 목적세 세수 비중

(단위 : 억원, %)

	1995	1996	1997	1998추경예산
○ 총국세	567,746	649,602	699,277	763,987
○ 목적세	76,963 (13.5)	104,342 (16.1)	119,854 (17.1)	143,068 (18.7)
- 교육세	29,931 (5.3)	41,242 (6.3)	53,985 (7.7)	62,055 (8.1)
- 농특세	13,314 (2.3)	14,860 (2.3)	10,398 (1.5)	11,042 (1.4)
- 교통세	33,718 (5.9)	48,240 (7.4)	55,471 (7.9)	69,971 (9.2)

주 : () 내는 총국세 중 목적세 비중

III. 조세체계의 간소화 방안

1. 부가세 방식의 과세체계 정비

가. 농어촌특별세의 폐지

○ 부가세 방식의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폐지

(단위 : %)

과세대상	세율	검토방안
소득세·법인세 감면분	20	본세 흡수 : 감면을 축소
저축 감면분	10	본세 흡수 : 감면을 축소
증권거래분	0.15	본세 흡수
특별소비세액	10, 30	본세 흡수
취득세액	10	폐지, 본세 흡수 또는 교통세율 조정으로 흡수
종합토지세액	10, 15	본세 흡수
경주·마권세액	20	본세 흡수

나. 교육세의 폐지

○ 부가세 방식의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폐지

(단위 : %)

과세대상	세율	검토방안
특별소비세액	15, 30	본세 흡수
교통세액	15	본세 흡수
주세액	10, 30	본세 흡수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0.5	본세 흡수
등록세액	20	폐지, 본세 흡수 또는 교통세율 조정으로 흡수
자동차세액	30	
균등할주민세액	10, 25	본세 흡수
재산세액	20	본세 흡수
종합토지세액	20	본세 흡수
담배소비세액	40	본세 흡수
경주·마권세액	50	본세 흡수

⇒ [사례 1] 승용자동차 구입시의 세금은 7가지에서 4가지로, [사례 2] 토지 취득시 세금은 4가지에서 2가지로 줄어들게 됨.

다. 소득할주민세 : 소득세·법인세에 통합

- 소득할주민세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통합
- 소득할주민세(지방세)는 국세인 소득세액에 10%를 부과하는 부가세 방식으로서 소득과세가 이원화되는 문제
-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로 이중부담과 징수편의적이라는 인식과 납세자의 불편 초래
- * 매년 5월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후 구청에 가서 소득할주민세를 신고·납부 → 사회적 비용 파다
- 주민세 폐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감소분은 농특세 및 교육세의 폐지로 인한 자주재원 증가분으로 충당됨.
- 주민세의 국세 통합은 장기적으로 공동세제도 도입

을 위한 기초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

*** 공동세제도 (tax base sharing system)**

: 공동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징수하여 일정한 배분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나누어 가짐.

2. 실효성 없는 세목을 정비

가. 교통세 : 특별소비세에 통합

- 석유류에 대한 과세가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로 이원화되어 있어 복잡
- 휘발유·경유 : 교통세
- 등유·LPG·LNG : 특별소비세

○ 세입 전액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어 도로·지하철 건설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교통세를 특별소비세에 통합

○ 이와 함께 현행 특별소비세를 실제 세목의 성격에 맞게 「개별소비세」로 명칭 변경

나.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는 1993년 이후 과세실적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994년 7월 29일)에 따라 1994년 12월 일부 보완한 바 있음.

○ 1995년 7월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는 등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 최근의 지가안정 추세를 감안하여
-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

다. 부당이득세 폐지

- 부당이득세는 지정고시가격을 위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100% 세금으로 흡수하는 조세로서
- 벌금의 성격이 강하여 조세체계에 포함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국제적인 과세체계와도 맞지 않음.
- 1990년 이후 가격자율화 추세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이 축소되고, 과세실적도 거의 없음.
- * 과세실적 : 1974년 8억원(최고), 1991년(0.9억원), 1992년 이후 없음.
- 부당이득세를 폐지하고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최고가격 위반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세 과세 대신에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규제하는 방법으로 전환

라. 자산재평가세 폐지

-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자산재평가법을 2000년말까지의 한시법으로 전환한 바 있어 2001년부터는 폐지되도록 되어 있음.

마. 전화세 :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에 통합

- 전화가입자의 전화사용료에 대하여 10%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전화세를
-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에 통합함으로써 세목을 단순화하고, 과세대상도 명확히 하는 방안 검토

- 다만, 부가가치세로 통합시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세수감소 발생으로 지방양여금재원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에 통합

〈조세체계 간소화 후의 세목 변화〉

- 조세 세목을 32개에서 대폭 축소
- 국세 : 17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축소
- 지방세 : 15개 세목에서 최대한 축소

IV.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자원보전대책

- 목적세 폐지 등의 조세체계 간소화는
- 앞으로 늘어날 재정소요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현행 조세수입 수준이 유지되도록 개편하고
- 폐지되는 세목으로 인한 국세 감소분은 타 세목의 세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전

-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자원변동분에 대하여는
- 지방재원과 농어촌, 교육, 교통시설 등 특정 목적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제도의 지원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며
-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 및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도록 함.

조세체계 간소화 후의 세목 변화

	현 행	개 편 방 향
<국 세> 내국세	① 소득세 ② 법인세 ③ 상속세 ④ 증여세 ⑤ 부가가치세 ⑥ 특별소비세 ⑦ 주 세 ⑧ 인지세 ⑨ 증권거래세 ⑩ 토지초과이득세 ⑪ 자산재평가세 ⑫ 부당이득세 ⑬ 전화세	① 소득세 ② 법인세 ③ 상속세 ④ 증여세 ⑤ 부가가치세 ⑥ 개별소비세(교통세 등 통합) ⑦ 주세 ⑧ 인지세 ⑨ 증권거래세 → (폐지) → (폐지) : 2000년까지 한시법 → (폐지) →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에 통합)
목적세	⑭ 교육세 ⑮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 (본세에 흡수 통합) → (본세에 흡수 통합) → (개별소비세에 통합)
관 세	관 세	⑩ 관 세
<지방세> ○ 15개세목 →		○ 최대한 축소 * 소득할주민세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통합
	※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지방세 세목을 추가로 축소하도록 유도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에서 4월 24일에 발표한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입니다.

- 제13회 차관회의(1998년 4월 23일)에서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30% 적용하여 교통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일(토) 시행할 예정임.
- 교통세율 인상 및 가격 변동 내역(〈표 1〉 참조)

- 추진배경
 - 최근 국제원유가의 하락 및 환율안정 등의 영향으로 유류가격이 연초보다 하락하여 교통난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 유류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어
 - 추가 유가인하 요인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교통난 및 대기오염 억제에 도움을 주고자
 - 자동차용 연료인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상향조정함.

〈 표 1 〉

(단위 : 원/l)

	교통세율			소비자 가격			
	현행	개정	인상폭	현행	세금인상분	인하요인분	최종가격
휘발유	455	591	136	1,047	+172	-159 ~ -119	1,060~1,100
경유	85	110	25	590	+32	-162 ~ -132	460~490

주 : 1. 세금인상분 : 교통세 인상에 따른 교육세·부가가치세 추가인상분을 포함
 2. 인하요인분 : 국제원유가·환율하락에 따른 가격인하요인 추정치
 3. 최종가격은 1997년 유가·자유화조치 시행으로 실제가격과 다를 수 있음.



〈참고자료〉

유류가격 변동 추이

	1996.1.1	1997.1.1	1997.6.3	1997.11.28	1997.12.19	1998.1.9	1998.1.19	1998.2.18	1998.3.1	1998.4.20
휘발유(원/l)	730	829	826	923	1,083	1,135	1,215	1,165	1,047	1,047
(세율, %)	(345)	(414)	(→)	(→)	(→)	(455)	(→)	(→)	(→)	(→)
경유(원/l)	352	381	371	457	618	665	755	755	590	590
(세율, %)	(40)	(48)	(→)	(→)	(→)	(85)	(→)	(→)	(→)	(→)
원유가(\$/B)	16.54	22.13	18.32	18.04	15.95	13.14	13.75	12.76	11.60	12.79
환율(W/\$)	774.70	845.00	894.70	1,188.3	1,627.5	1,890.0	1,617.1	1,751.0	1,689.3	1,380.0

휘발유·경유의 국제가격 비교

	휘발유(A)	경유(B)	B/A
OECD비산유국 평균	1,205원/l (100)	1,000원/l (100)	0.83
한국	1,047(87)	590 (59)	0.56

최근의 휘발유 가격 및 교통량 현황

		휘발유		교통량	
		소비자가격 (원/l)	일평균소비량 (천배럴/일)	고속도로 (천대/일)	남산1·3호터널 (대/일)
1997	11월	837	192	2,241	78,921
	12월	1,083	192	2,180	78,632
1998	1월	1,215	138	1,938	74,018
	2월	1,165	131	1,727	75,592
	3월	1,047	196	1,794	77,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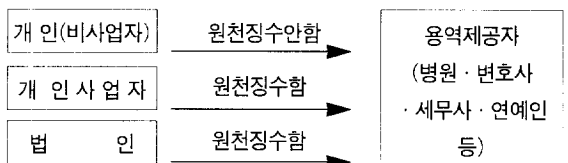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에서 4월 29일에 발표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의 전문입니다.

- 1998년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1998년 5월 1일부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에서 3%로 상향조정됨.
- 예를 들어 회사가 법률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수임료로 1백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현재는 1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나 5월 1일부터는 3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개인사업자나 모든 법인이 변호사나 의사,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유직업 소득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것임.
- 3%의 원천징수세율은 1998년 5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서비스를 5월 이전에 받은 경우에도 그 대가를 5월 1일 이후에 지급하게 되면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 병원·변호사·연예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제공자(개인)에 대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지급액의 3%(1998년 4월말까지는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임.

2. 변호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는 모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가 ?

- 그렇지 않음.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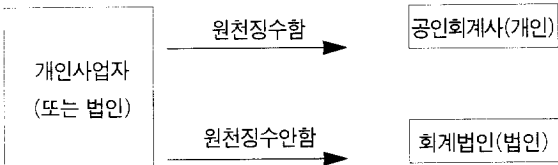


1.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란 무엇인가 ?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3. 사업자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과 같은 법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당해 법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가?

- 그렇지 않음.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는 것임.
- 법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개인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할 세액이 건당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4.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음의 의료보건용역·인적용역을 말함.
- 의료보건용역
 -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 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 장의업자 제공하는 장의용역
- 의료보건위생용역: 분노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
- 조청소용역: 적출물처리용역, 소독용역;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작업환경측정용역

○ 전문인적용역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기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보도 참고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에서 5월 1일에 발표한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보도 참고」의 전문입니다.

I. 기사내용 요지

○ 최근 기업들이 계열사나 핵심사업을 국내외에서 매각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증가

○ 특히, 법인세의 경우 정책당국이 전혀 감면조치를 검토하지 않아 기업에 큰 부담 → 구조조정의 장애 요인

- 예

• 대상 : 라이신 사업을 6억달러에 매각
→ 1998 사업연도에 이익이 날 경우 최고 1억달러 이상 세금 납부 예상

• 한화 : 한화바스프우레탄을 1,200억원에 매각

→ 100억원의 세금(법인세 : 72억원) 기납부

• 효성 : 효성바스프를 640억원에 매각

→ 매각대금 중 제비용을 공제하고 20% 정도 세금 납부 예상

○ 특별부가세의 경우도 지난 2월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감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여전히 높음.

- 또한 감면조치가 까다로워 은행과 마찰이 있는바, 정부의 약속대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자산매각에 대한 세금감면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의 경우는 소득이 다시 기업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예외인정 조치 필요

○ 사실관계(회사측 제시자료)

① 대상그룹

- (주)대상이 라이신사업을 금년중 독일 바스프사에 매각
- 총산출세액은 1억 6천만달러이나, 감면세액이 7,400만달러이고 납부세액이 9,500만달러임.

② 한화그룹

- 1997년 한화종합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한화바스프(주)의 지분 50%를 독일 바스프사에 매각

③ 효성그룹

- 효성 T&C가 보유하고 있던 효성바스프(주)의 지분 50%를 1998년 3월 독일 바스프사에 매각

- 매각대금 : 640억원
- 현재로서는 고금리 등으로 금년 경영실적 전망이 불투명하여 법인세액의 예측이 불가능

○ 참고사항

- (주)대상의 경우 1998 사업연도 부분이 흑자일 경우 라이신사업의 매각(6억달러)과 관련하여 1,400억원(1억달러)이 과세되는 것은 사실이나
- 이와 관련하여 감면되는 세액도 1,01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 이 중 부가가치세 200억원은 국세청에서 추가로 부과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며, 비과세되지 않더라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주)대상측의 부담은 아님.
- 한화그룹의 경우 1998년 3월 1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효성그룹의 경우에는 1998년의 경영실적이 불투명하여 전액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문보도는 사실과 다름.
- 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양도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흑자법인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까지 전액 비과세하는 경우
-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개인소득 중 타부분과의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II. 현행 구조조정 지원세제

- 1997년 12월 및 1998년 2월 세제개편시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을 대폭 개정하여 기업구조조정을 획기적으로 지원한 바 있음.
- 조직변경

- 합병
 - 특별부가세 비과세(과세이연)
 - 취득세 면제
 - 합병차익 법인세 과세이연(1997년 12월 개정)
 - 등록세 면제(1998년 2월 개정)
- 분할
 - 법인세 · 특별부가세 과세이연(1997년 12월 개정)
 - 취득세 · 등록세 면제 등(1997년 12월 개정)
- 통합
 -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법인전환
 -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사업조정
 - 사업전환
 -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5년간 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 기업양도
 - 주주의 보증채무 인수액 손비인정(1998년 2월 개정)
 - 법인의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1998년 2월 개정)
 -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등(1998년 2월 개정)
 - 사업양수
 - 취득세 · 등록세 면제(1998년 2월 개정)
 - 사업교환
 - 법인세 · 특별부가세 과세이연(1998년 2월 개정)
 - 취득세 · 등록세 면제(1998년 2월 개정)
 - 자산매각
 - 각종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처분시 양도세(특별부가세) 50% 감면(1998년 2월 개정)
- 재무구조개선
 - 부채상환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특별부
가세) 면제(1997년 12월 개정)

• 기업주 재산출연

양도소득세 50~100% 감면(1998년 2월 개정)
법인의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1998년 2월개정)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1998년 2월 개정)

• 증자

증자소득공제(중소기업, 1997년 8월 개정)

○ 기업들이 이와 같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구조
조정단계에서의 세부담은 거의 없음.

-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 전에 미리 이러한 지원제도를
충분히 파악한 후 요건대로 이행하면 충분히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기업들이 이러한 지원제도의 내용·요건을 제대로 확
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자산매각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영업소득과의
형평, 건설경영기업과의 형평 등을 감안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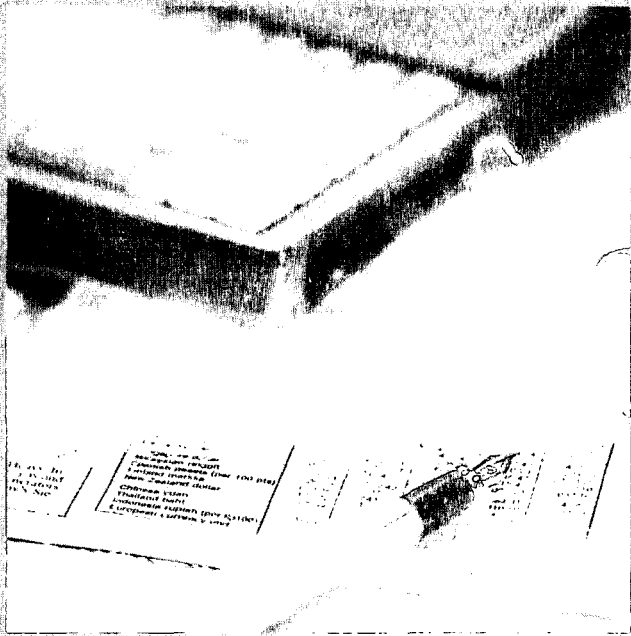
-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 탈세의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므로
- 금융기관협의회 승인 등 지원요건과 함께 매각대금
의 부채상환 사용여부·부채비율 증가여부 등 엄격한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으며
- 이러한 지원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세제지원을 허용할 수 없음.
- * 과거 산업합리화제도 운영시에도 개별 건마다 각종 요
건을 규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세제지원을 하였음.
- * 외국의 경우 부채상환 등 구조조정을 위한 단순 자산
매각에 대해 조세감면해 주는 사례는 없음.

○ 자산 양도자의 소득에 대한 무조건적인 세제지원은
- 정상적인 영업활동소득과의 형평문제로 기업의욕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이 있으며

- 이를 편법으로 이용하여 탈세하거나 또는 부를 부당
하게 이전할 가능성도 있어
- 일정한 요건과 사후관리가 필수적임.

○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제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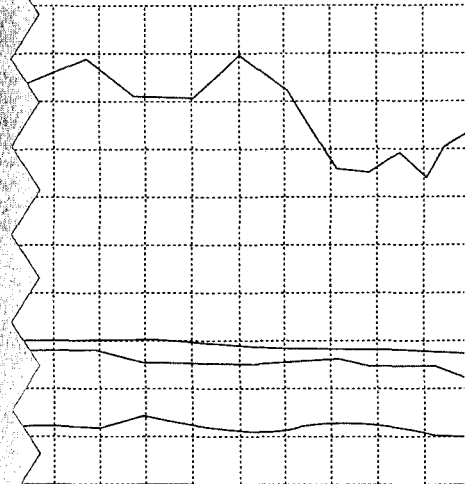
-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으며, 이를 인정할 경우 법
인의 소득 중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을 특별 지원
하는 결과가 되어
- 정상적인 영업활동 소득과의 불형평은 물론 일반 개
인소득 등 타부문의 불형평 문제를 야기함.



재정통계

국제비교자료(1)

1. OECD 국가의 총조세 수입 추이
2.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3.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사회보장비 제외)
4. OECD 국가의 1인당 조세부담금



1. OECD 국가의 총조세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US달러)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캐나다	14,169	26,900	56,659	86,395	117,651	209,080	218,313	209,398	200,112	200,578
멕시코	-	-	-	33,826	33,776	45,400	54,086	63,931	71,259	71,019
미국	167,022	276,727	415,386	730,672	1,069,914	1,518,705	1,571,418	1,639,334	1,746,436	1,885,427
호주	5,627	9,528	27,650	45,407	50,450	90,940	87,656	85,197	83,901	99,706
일본	17,144	41,203	107,534	275,390	375,593	936,218	1,042,929	1,072,894	1,228,939	1,303,845
뉴질랜드	1,392	1,756	4,146	7,397	7,524	16,389	15,249	14,799	16,126	19,160
오스트리아	3,287	5,163	14,555	31,651	28,058	65,401	69,078	80,530	79,361	84,880
벨기에	5,181	9,024	25,824	52,448	38,145	86,067	88,447	99,054	95,777	106,298
체코	-	-	-	-	-	-	-	-	14,944	17,034
덴마크	3,044	6,387	15,563	30,160	28,460	62,928	63,221	69,746	67,905	75,281
핀란드	2,525	3,537	10,584	18,942	21,824	61,184	56,887	49,860	38,357	46,052
프랑스	34,247	50,100	126,378	277,211	232,553	522,534	527,387	577,149	549,073	586,483
독일	36,276	60,757	150,296	309,086	235,986	550,489	656,266	767,241	745,883	803,150
그리스	1,317	2,524	5,338	11,795	11,742	24,980	27,581	31,742	30,113	33,055
헝가리	-	-	-	-	-	-	14,151	15,755	16,165	16,975
아이슬란드	139	142	415	986	828	1,962	2,111	2,224	1,902	1,920
아일랜드	699	1,214	2,646	6,548	7,151	15,832	16,273	18,459	17,292	19,465
이탈리아	17,056	28,080	55,656	136,602	146,552	428,459	456,916	513,830	431,346	424,110
룩셈부르크	215	340	1,010	2,105	1,782	4,485	4,649	5,276	5,642	6,460
네덜란드	6,611	12,585	37,975	77,601	56,536	126,468	136,944	150,597	148,672	153,556
노르웨이	2,358	4,390	12,766	27,173	27,675	48,215	49,197	51,723	46,611	50,769
폴란드	-	-	-	-	-	-	28,461	32,252	36,462	40,043
포르투갈	688	1,426	3,650	7,199	6,541	20,850	24,568	31,695	26,633	28,717
스페인	3,434	6,337	20,549	51,055	47,724	169,208	183,579	207,735	167,332	172,634
스웨덴	7,733	13,393	31,784	61,286	50,381	127,721	128,489	126,260	93,129	100,815
스위스	2,882	4,936	16,078	31,283	29,689	71,193	71,994	76,762	77,133	87,174
터키	1,271	2,234	7,455	12,343	10,382	30,175	31,701	35,686	40,903	29,058
영국	30,643	45,758	83,032	189,891	174,016	356,121	362,703	369,043	316,558	348,322
OECD Total	15,207	25,602	51,372	100,578	112,437	223,640	221,861	236,969	228,356	243,285
OECD America	90,596	151,813	236,022	283,631	407,114	591,062	614,605	637,554	672,602	719,008
OECD Pacific	8,054	17,495	46,443	109,398	144,522	347,849	381,945	390,963	442,989	474,237
OECD Europe	8,400	13,596	32,713	70,282	60,843	146,014	142,886	157,744	138,509	146,920
EU 15	10,197	16,442	38,989	84,239	72,497	174,849	186,866	206,548	187,538	199,285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5, 1996.

2.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단위 : %)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캐나다	25.9	27.0	28.1	28.9	31.1	31.3	30.8
멕시코	-	-	-	-	-	-	-
미국	24.3	24.6	25.7	25.1	27.6	27.4	25.9
호주	23.2	22.6	23.4	23.2	24.0	24.2	24.7
일본	18.3	17.8	18.3	18.5	18.8	19.7	20.0
뉴질랜드	24.7	25.6	25.4	25.2	25.2	27.4	27.5
오스트리아	34.7	35.4	35.3	35.3	35.8	35.7	36.4
벨기에	31.2	33.3	34.0	34.8	35.0	35.7	36.7
체코	-	-	-	-	-	-	-
덴마크	29.9	32.5	33.1	36.0	35.7	40.4	43.5
핀란드	30.3	31.5	32.4	32.8	31.3	32.5	34.1
프랑스	34.5	34.3	34.7	34.9	35.8	35.1	34.5
독일	31.6	32.2	32.2	32.2	33.9	32.9	33.4
그리스	22.0	23.7	24.8	25.7	25.7	25.3	25.2
헝가리	-	-	-	-	-	-	-
아이슬란드	26.2	-	-	-	-	27.0	-
아일랜드	25.9	27.9	28.5	28.9	29.6	31.0	32.1
이탈리아	25.5	25.3	26.2	27.0	26.4	26.1	26.9
룩셈부르크	30.6	30.3	31.0	30.0	30.2	30.9	33.6
네덜란드	32.7	34.1	35.1	35.8	36.1	37.0	38.8
노르웨이	33.3	34.6	36.6	37.7	39.1	39.3	42.4
폴란드	-	-	-	-	-	-	-
포르투갈	16.2	16.7	17.3	17.4	18.1	20.3	20.0
스페인	14.7	13.6	16.9	16.1	16.4	16.9	17.1
스웨덴	35.0	35.8	36.7	38.8	39.8	39.8	40.6
스위스	20.7	21.5	21.6	22.6	23.7	23.8	23.5
터키	10.6	10.7	11.4	11.3	12.2	12.5	14.3
영국	30.4	31.6	32.9	34.5	36.1	36.9	34.8
OECD Total	26.3	27.1	27.9	28.4	29.0	29.5	30.3
OECD America	25.1	25.8	26.9	27.0	29.4	29.3	28.3
OECD Pacific	22.1	22.0	22.3	22.3	22.7	23.8	24.1
OECD Europe	27.2	28.0	28.9	29.5	30.1	30.5	31.6
EU 15	28.3	29.2	30.1	30.7	31.1	31.8	32.5

2.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계속)

(단위 : %)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캐나다	31.3	30.9	33.3	32.4	31.8	31.2	30.8	30.6
멕시코	-	-	-	-	-	-	-	-
미국	26.6	26.6	27.1	26.7	26.0	26.7	26.6	26.5
호주	23.8	25.3	27.1	27.5	28.0	28.0	26.8	27.5
일본	20.7	22.5	23.0	20.9	21.8	22.3	24.0	24.4
뉴질랜드	27.2	28.5	31.3	31.1	30.7	33.2	31.8	32.7
오스트리아	36.9	37.1	38.1	38.6	38.5	39.1	41.4	41.0
벨기에	37.0	38.0	38.9	41.8	42.2	43.8	45.0	45.5
체코	-	-	-	-	-	-	-	-
덴마크	42.9	42.4	44.2	41.4	41.6	41.9	43.4	44.5
핀란드	34.6	35.5	34.7	37.7	41.7	41.9	38.2	36.7
프랑스	34.9	35.0	35.5	36.9	38.7	38.7	38.6	40.2
독일	34.8	36.3	36.5	36.0	36.8	38.2	37.9	37.8
그리스	25.4	23.8	24.6	25.5	28.0	28.5	28.8	30.1
헝가리	-	-	-	-	-	-	-	-
아이슬란드	-	-	-	29.6	-	-	-	-
아일랜드	30.6	30.7	31.1	31.3	34.8	33.1	31.3	30.9
이탈리아	26.9	24.4	25.7	26.2	27.1	27.4	27.4	26.6
룩셈부르크	34.2	34.7	35.8	42.8	43.0	47.7	48.7	45.5
네덜란드	39.6	41.1	41.6	42.9	42.6	43.3	43.9	44.3
노르웨이	44.9	45.3	44.8	44.9	46.2	47.3	46.6	45.7
폴란드	-	-	-	-	-	-	-	-
포르투갈	19.7	19.3	19.8	21.7	23.6	24.1	23.3	22.9
스페인	18.1	18.7	18.1	19.5	19.5	21.4	22.8	23.3
스웨덴	42.0	41.2	42.3	43.4	47.6	49.9	50.3	49.0
스위스	23.9	26.3	27.3	29.6	31.3	31.6	31.6	31.1
터키	14.6	15.2	14.1	16.0	16.3	17.1	16.6	15.7
영국	33.3	31.3	34.9	35.5	35.3	34.7	33.0	32.6
OECD Total	30.6	30.9	31.7	32.5	33.6	34.4	34.3	34.1
OECD America	29.0	28.7	30.2	29.6	28.9	28.9	28.7	28.6
OECD Pacific	23.9	25.4	27.1	26.5	26.8	27.8	27.5	28.2
OECD Europe	31.9	32.0	32.7	33.8	35.3	36.1	36.0	35.8
EU 15	32.7	32.6	33.5	34.8	36.1	36.9	36.9	36.7



2.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계속)

(단위 :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캐나다	31.6	33.6	33.5	32.9	33.0	33.1	33.7
멕시코	17.4	16.9	17.4	19.4	18.7	18.3	17.4
미국	26.9	27.3	27.1	25.5	25.5	26.0	25.8
호주	28.4	29.3	29.6	28.4	30.0	30.0	30.9
일본	25.4	26.2	26.6	27.0	27.1	27.6	28.4
뉴질랜드	32.9	33.8	34.5	32.1	32.2	33.3	33.7
오스트리아	41.2	42.5	41.2	41.1	42.4	43.1	42.9
벨기에	44.4	45.0	46.4	46.4	47.4	47.7	47.1
체코	-	-	-	-	-	-	-
덴마크	45.5	45.3	44.5	46.5	47.6	49.0	50.8
핀란드	36.9	38.9	37.8	37.6	39.2	40.8	42.4
프랑스	41.7	41.9	42.8	43.6	44.6	44.5	44.0
독일	38.2	37.7	37.7	37.4	37.6	38.1	37.7
그리스	29.4	29.6	33.4	33.9	34.9	35.1	36.9
헝가리	-	-	-	-	-	-	-
아이슬란드	29.2	30.2	30.6	28.1	29.7	28.4	28.5
아일랜드	33.8	35.0	36.5	38.0	38.8	36.4	37.2
이탈리아	30.2	31.4	33.7	35.8	34.9	34.5	36.0
룩셈부르크	46.3	47.8	49.1	51.8	50.1	46.7	44.0
네덜란드	45.0	44.4	44.7	46.0	44.2	44.1	44.9
노르웨이	47.1	48.7	47.9	46.6	45.8	47.6	50.0
폴란드	-	-	-	-	-	-	-
포르투갈	25.2	26.7	27.4	28.9	28.4	27.8	29.4
스페인	24.1	25.4	25.6	27.5	28.8	28.8	30.6
스웨덴	48.8	50.1	49.1	49.8	49.5	50.0	52.5
스위스	30.8	30.6	31.0	31.6	32.3	32.0	32.5
터키	17.9	19.0	18.4	17.2	14.3	15.4	17.5
영국	35.3	36.5	39.0	37.3	37.9	37.9	37.6
OECD Total	34.1	34.9	35.4	35.6	35.8	35.9	36.5
OECD America	25.3	26.0	26.0	25.9	25.7	25.8	25.6
OECD Pacific	28.9	29.7	30.2	29.2	29.8	30.3	31.0
OECD Europe	36.4	37.2	37.7	38.2	38.3	38.3	39.1
EU 15	37.7	38.5	39.3	40.1	40.4	40.3	40.9

2.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계속)

(단위 :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캐나다	34.7	34.0	35.1	36.5	36.7	36.4	35.8	36.1
멕시코	18.4	17.7	18.6	18.6	18.9	19.4	19.7	18.8
미국	27.1	26.9	27.0	26.7	26.8	26.7	27.0	27.6
호주	31.1	30.7	30.6	30.8	29.1	28.7	28.8	29.9
일본	29.7	30.3	30.7	31.3	30.8	29.2	29.1	27.8
뉴질랜드	36.5	36.0	38.7	37.6	36.3	36.2	35.6	37.0
오스트리아	42.3	42.0	41.0	41.3	41.9	43.2	43.5	42.8
벨기에	47.5	46.0	44.5	44.8	44.9	44.9	45.6	46.6
체코	-	-	-	-	-	-	47.8	47.3
덴마크	51.5	51.7	50.7	48.7	48.8	49.2	50.3	51.6
핀란드	40.1	43.3	43.4	45.4	46.9	46.8	45.4	47.3
프랑스	44.5	43.8	43.7	43.7	43.9	43.7	43.9	44.1
독일	38.0	37.7	38.2	36.7	38.2	39.0	39.1	39.3
그리스	37.2	34.9	34.6	37.5	39.0	40.8	41.2	42.5
헝가리	-	-	-	-	42.4	42.4	42.0	41.0
아이슬란드	28.9	31.5	32.5	31.4	31.4	32.2	31.3	30.9
아일랜드	37.4	39.0	35.4	35.2	35.8	36.2	36.4	37.5
이탈리아	36.1	36.7	37.9	39.1	39.7	42.1	43.8	41.7
룩셈부르크	44.5	43.3	42.3	43.6	42.9	42.5	44.3	45.0
네덜란드	47.5	47.6	44.9	44.6	47.2	46.8	47.7	45.9
노르웨이	47.9	43.1	41.3	41.8	41.8	41.0	40.2	41.2
폴란드	-	-	-	-	37.2	38.2	42.4	43.2
포르투갈	27.6	30.1	30.8	31.0	31.7	33.4	31.4	33.0
스페인	32.5	32.8	34.6	34.4	34.7	36.0	35.0	35.8
스웨덴	55.4	54.8	55.5	55.6	53.7	51.0	50.1	51.0
스위스	32.0	32.6	31.7	31.5	31.2	31.9	33.2	33.9
터키	18.8	17.8	18.7	20.0	21.0	22.4	22.7	22.2
영국	37.2	37.1	36.2	36.4	35.7	35.1	33.4	34.1
OECD Total	37.0	36.9	36.7	37.0	37.4	37.6	38.1	38.4
OECD America	26.7	26.2	26.9	27.3	27.5	27.5	27.5	27.5
OECD Pacific	32.4	32.3	33.4	33.2	32.1	31.4	31.2	31.6
OECD Europe	39.3	39.2	38.8	39.1	39.5	39.9	40.5	40.8
EU 15	41.3	41.4	40.9	41.2	41.7	42.0	42.1	42.5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5, 1996.



3. OECD 국가의 GDP대비 조세부담률(사회보장비 제외)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캐나다	24.5	28.3	29.2	28.3	28.6	31.2	31.1	30.4	29.9	30.0
멕시코	-	-	-	14.7	16.0	15.9	16.0	16.3	16.2	15.1
미국	21.1	23.0	21.3	21.0	19.5	19.8	19.8	19.7	20.1	20.6
호주	23.2	24.2	27.5	28.4	30.0	30.8	29.1	28.7	28.8	29.9
일본	14.3	15.3	14.9	18.0	19.3	22.2	21.6	19.8	19.3	18.1
뉴질랜드	24.7	27.4	31.1	32.9	33.3	37.6	36.3	36.2	35.6	37.0
오스트리아	26.0	26.6	28.0	28.4	29.4	27.7	28.2	29.0	28.7	27.8
벨기에	21.4	24.9	28.5	30.9	32.3	29.7	29.2	29.1	29.5	31.1
체코	-	-	-	-	-	-	-	-	29.5	28.3
덴마크	28.3	38.8	40.8	44.7	47.2	47.2	47.4	47.6	48.7	49.9
핀란드	28.3	29.6	32.0	29.8	33.7	35.5	35.5	36.0	33.4	35.2
프랑스	22.7	22.3	21.9	23.9	25.2	24.4	24.7	24.2	24.3	24.9
독일	23.1	22.9	23.8	25.1	24.2	22.9	23.4	24.0	23.9	23.9
그리스	15.0	17.7	17.9	19.7	22.6	25.9	26.6	28.1	27.3	27.8
헝가리	-	-	-	-	-	-	29.0	27.7	27.1	26.9
아이슬란드	24.1	24.8	28.8	28.6	27.7	30.4	29.2	29.6	28.8	28.4
아일랜드	24.2	28.5	27.0	29.0	31.0	30.0	30.4	30.7	30.8	32.0
이탈리아	16.8	16.3	14.2	18.7	22.5	26.2	26.6	28.8	30.0	28.7
룩셈부르크	20.7	22.1	30.2	32.8	34.4	31.7	30.7	30.0	31.9	33.1
네덜란드	22.6	24.0	26.4	27.9	24.6	27.9	29.6	28.6	29.5	26.6
노르웨이	29.3	33.0	33.7	37.2	37.8	30.8	30.9	30.0	30.1	31.3
폴란드	-	-	-	-	-	-	25.5	26.9	30.1	30.4
포르투갈	12.6	15.4	14.2	17.8	20.6	22.6	23.1	24.9	23.0	24.3
스페인	10.5	10.6	10.3	12.4	16.9	22.2	22.4	22.8	21.7	22.0
스웨덴	30.8	33.8	34.9	34.8	37.5	40.5	38.1	36.0	36.4	37.2
스위스	16.1	18.2	21.0	21.3	21.8	21.1	20.5	20.8	20.8	21.5
터키	9.9	11.7	14.5	15.4	13.2	16.1	16.9	17.9	18.2	18.7
영국	25.7	31.8	29.4	29.4	31.2	30.2	29.5	28.8	27.5	27.9
OECD Total	21.5	23.8	25.1	26.0	27.2	28.0	27.8	27.9	27.9	28.2
OECD America	22.8	25.6	25.2	21.3	21.4	22.3	22.3	22.2	22.1	21.9
OECD Pacific	20.8	22.3	24.5	26.5	27.5	30.2	29.0	28.2	27.9	28.3
OECD Europe	21.5	23.8	25.1	26.7	28.1	28.6	28.4	28.6	28.7	29.0
EU 15	21.9	24.4	25.3	27.0	28.9	29.6	29.7	29.9	29.8	30.2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5, 1996.

4. OECD 국가의 1인당 조세부담금

(단위 : US달러)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캐나다	721	1,263	2,441	3,513	4,535	7,523	7,764	7,336	6,914	6,858
멕시코	-	-	-	486	433	527	616	714	781	764
미국	860	1,350	1,923	3,209	4,487	6,077	6,220	6,419	6,766	7,234
호주	483	743	1,990	3,090	3,195	5,329	5,071	4,871	4,752	5,589
일본	175	397	964	2,358	3,111	7,578	8,416	8,630	9,858	10,434
뉴질랜드	528	623	1,343	2,353	2,299	4,873	4,477	4,298	4,634	5,434
오스트리아	452	691	1,920	4,193	3,712	8,474	8,830	10,214	9,929	10,569
벨기에	547	935	2,636	5,326	3,869	8,635	8,840	9,861	9,498	10,500
체코	-	-	-	-	-	-	-	-	1,446	1,648
덴마크	640	1,296	3,076	5,885	5,565	12,240	12,266	13,488	13,086	14,460
핀란드	553	768	2,246	3,963	4,452	12,271	11,312	9,889	7,572	9,051
프랑스	702	987	2,398	5,145	4,207	9,210	9,243	10,059	9,523	10,129
독일	619	1,002	2,430	5,023	3,870	8,703	10,242	11,828	11,382	12,197
그리스	154	287	590	1,223	1,182	2,476	2,704	3,078	2,904	3,169
헝가리	-	-	-	-	-	-	1,367	1,527	1,571	1,648
아이슬란드	723	693	1,905	4,325	3,436	7,696	8,182	8,487	7,177	7,191
아일랜드	243	411	833	1,925	2,020	4,520	4,618	5,201	4,853	5,451
이탈리아	327	522	1,004	2,421	2,586	7,552	8,050	9,037	7,558	7,416
룩셈부르크	646	1,001	2,813	5,782	4,855	11,804	12,106	13,599	14,356	16,271
네덜란드	538	965	2,779	5,484	3,901	8,459	9,087	9,918	9,723	9,983
노르웨이	633	1,132	3,186	6,649	6,664	11,369	11,543	12,065	10,810	11,706
폴란드	-	-	-	-	-	-	744	841	948	1,040
포르투갈	78	164	401	737	653	2,114	2,490	3,214	2,697	2,902
스페인	107	187	579	1,366	1,242	4,355	4,717	5,325	4,281	4,410
스웨덴	1,000	1,665	3,880	7,374	6,034	14,910	14,911	14,566	10,682	11,481
스위스	485	788	2,511	4,899	4,544	10,607	10,587	11,165	11,117	12,464
터키	40	63	185	276	205	533	553	611	688	480
영국	564	823	1,477	3,371	3,070	6,198	6,274	6,362	5,440	5,968
OECD Total	492	781	1,896	3,615	3,365	7,361	7,083	7,504	6,820	7,373
OECD America	790	1,306	2,182	2,402	3,152	4,709	4,866	4,823	4,821	4,952
OECD Pacific	395	588	1,433	2,600	2,868	5,927	5,988	5,933	6,414	7,152
OECD Europe	476	757	1,939	3,967	3,477	8,007	7,556	8,111	7,147	7,733
EU 15	478	780	1,937	3,948	3,415	8,128	8,379	9,043	8,232	8,930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5, 1996.